

중국경제 FOCUS

2002. 12.

산업자원부
대중국 투자·자원 협력반

목 차

- 초 점 1
 - 中 구이저우(貴州)성의 환경보호 산업 / 3

- 투자·자원 정보 31
 - 中 2003년 1월 1일부터 110여개 수입품에 영세율 적용 / 33
 - KOTRA 「최신 중국 조세제도 해설집 발간」 / 34
 - 주권반환 3주년 마카오를 다시 본다 / 67

- 전문가 논단 79
 - 中 WTO 가입 1년, AMCHAM 평가보고서 / 81

- 법규와 제도 103
 -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 / 105
 - 외국국적 고급인재 및 투자가의 입국 및 거류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 / 112
 - 중국 주요 지역별 최저 임금표준 / 116
 - 2003년 중국의 법정 공휴일 / 117

초 점

中 구이저우(貴州)성의 환경보호산업

KOTRA 청두(成都) 무역관

1. 구이저우(貴州)성 개황

□ 일반 개황

구이저우(貴州)성은 중국 서남지역의 운귀(雲貴)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난(湖南)성, 쓰촨(四川)성, 충칭(重慶)시, 윈난(云南)성, 광시(廣西)성과 인접해 있음. 면적은 17.6만km²이고 9개시와 87개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발 평균 1,100m이고 9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역임.

□ 경제 발전

구이저우성은 중국내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임. 2001년 말 구이저우성의 GDP는 1,082억 위안으로 2000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1, 2, 3차 산업은 각각 274억 위안, 422억 위안, 386억 위안으로 GDP의 25.3%, 39.0% 및 35.7%를 차지하고 있음. 2001년 재정 수입은 100억 위안이고 농림목축 산업의 총 생산액이 418.6억 위안에 달함.

<구이저우성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2000년	2001년
GDP(억 위안)	994	1,082
- 일인당 GDP(위안)	2,662	2,865
교역규모(US\$ 만)	66,002	64,978
- 수 출(US\$ 만)	42,060	42,170
- 수 입(US\$ 만)	23,942	22,808
외자기업수(개사)	715	714

자료원 : 구이저우 투자지남(貴州投資指南)

□ 자 원

구이저우성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중국 남부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기지임. 구이저우성의 수력 에너지자원 추정량은 1,874.5억kw로 중국에서 6번째로 크며 이 중 개발이 가능한 수력자원은 1,683만kw로 추정됨.

구이저우성은 석탄자원이 풍부해 매장량이 2,401억톤에 달함.(중국남부지역 12개성의 총 매장량에 상당함). 기 발견된 광물은 110개 종에 달함. 탐사완료된 76종의 광물 중 40종 광물의 매장량은 중국내에서 10위내에 들며 22종은 1~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주요 광물자원으로는 석탄, 인(磷), 수은, 알루미늄원광, 망간, 금, 중정석, 황철광, 시멘트, 벽돌 원료 및 각종 용도의 백운석, 사암, 석회암 등이 있으며 알루미늄 원광의 경우, 매장량 3.95억톤으로 중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 구

인구는 3,799만(2001년말)에 달함. 구이저우(貴州)성은 다민족 지역으로 49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구이저우(貴州)성 전체 인구의 37.85%를 차지하고 있음.

□ 기 후

아열대 계절풍기후에 속하나 성(省)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임. 대부분 지역은 상온 지역으로 1월에도 평균 4~9℃정도 기온임(연평균 14.5℃). 연간 강우량은 900~1,500mm이며 강우 일수는 160일 정도임.

□ 농 업

농업은 구이저우성의 주요 산업으로 전체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구이저우성은 평원이 없는 산간지역으로 경작지가 부족해 농업인구 1인당 경작지 면적은 0.05ha에 불과함. 구이저우성의 연간 식량 총 생산량은 1,161만톤임. 목축업은 구이저우성 농업의 지주산업으로 양돈과 소, 양 양육 위주임.

□ 공 업

에너지, 원자재, 기계전자, 경공업은 구이저우성 공업의 지주산업이며 항공, 전자공업은 주요 목표산업임. 담배공업은 구이저우성의 대표 산업이며 음료공업, 전력공업, 유색금속공업, 의약공업, 식품공업도 주요 산업에 속함.

□ 도 로

2000년 현재 구이저우성의 도로 총 길이는 34,260km에 달하고 이 중 일반 도로가 15,451km, 고속도로가 785km임. 주요 도로간선은 구이양(貴陽)-황귀수(黃果樹)구간, 구이양(貴陽)-준이(遵義)구간, 구이양(貴陽)-신자이(新寨) 구간, 구이양(貴陽)-비지에(畢節) 구간, 준이(遵義)-중씨허(崇溪河) 구간임.

□ 철 도

구이저우성은 중국 서남지역의 철로교통 중추로 후난(湖南)-구이저우, 구이양(貴陽)-쿤밍(昆明), 쓰촨(四川)-구이저우, 구이저우-광시(廣西) 철도의 합류지역이며 현재 철도 총 길이는 1,369km에 달함. 주요 철도 간선은 구이저우-광시(廣西), 쓰촨(四川)-구이저우(貴州), 구이양(貴陽)-쿤밍(昆明), 후난-구이저우, 난쿤(南昆)철도, 수이보(水柏)철도 등이 있음.

2. 환경 오염

2001년 구이저우성의 주요 대기오염원은 석탄연기로 인한 오염이며 산성비도 내리고 있음. 주요 하천의 수질도 비교적 양호하나 도시인근에서 흐르는 하천구간의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일부 저수지, 댐 지역은 부유물 영양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소음은 비교적 적은 편임.

카르스트 지형이 70% 이상인 구이저우성의 특성으로 인해 석질(石質)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산화황, COD 등 오염이 심한 상황임.

구이저우성의 오폐수배출량은 전체 오폐수 배출량의 62.8%이며 오폐수 처리율은 3.1%에 불과함. 2000년 공업 고체쓰레기의 생산량은 2,272만톤이고 배출량은 411만톤이며 공업 고체쓰레기의 적재 누계는 18,955만톤이며 이 중 위험폐기물의 생산량은 46만톤임.

□ 수질오염

○ 오폐수 및 오폐수중 주요 오염물 배출

2001년 구이저우성의 오폐수 총 배출량은 5.57억톤으로 전년대비 0.54% 증가했고 이 중 공업오폐수는 총 배출량의 37.4%를 차지하고 생활 및 기타 오폐수 배출량은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이저우성의 오폐수 COD 배출량은 20.7만톤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함. 공업오폐수 COD 배출량은 3.0만톤으로 전년대비 41.6% 감소했으나 생활 오폐수 COD 배출량은 17.7만톤으로 전년대비 0.23% 증가함. 공업 오폐수 중 오염물 석유류 배출량은 410.3톤으로 전년대비 32.2% 감소했으나 유독 오염물(시안화물, 비소, 수은, 납, 니켈, 크롬 등) 배출량은 39.6톤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함.

○ 수질 현황

2001년 기준 32개 하천의 73개 구간을 검사한 결과, 61.6%가 수질기준에 도달했고, 이 중 2급수 검측지 20개 중 세 지역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3급수 검측지 43개 중 16개 지역이 기준을 초과함. 또, 4급수 검측지 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5급수 검측지 1개 지역도 기준을 초과함.

○ 저수지, 댐

2001년 현재 구이저우성의 7개 댐(홍풍호(紅楓湖), 바이화호(百花湖), 아하수이쿠(阿哈水庫), 우장두수이쿠(烏江渡水庫), 홍산수이쿠(虹山水庫), 준사이수이쿠(窩篩水庫) 및 차오하이(草海) 등 23개 구간을 검측한 결과 26.1%가 수질 기준에 도달함. 그중 2급수 10개 구간을 검측 결과 8개 구간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3급수 13개 구간 검측 결과 9개 구간이 기준을 초과했음. 댐의 주요 오염물은 인(磷), 암모니아질소(氨氮), 용해산소 등임.

○ 지하수

구이저우성의 중심 도시인 구이양(貴陽)시를 비롯한 준이(遵義)시, 안순(安順)시, 리우판수이(六盤水)시 수이청(水城)분지 및 카이리(凱里)시의 지하수 총 채굴량은 1.61억^m로 전년대비 1.9% 증가함. 위의 5개 도시의 검측구간 중 식수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지하수 검측구 면적은 94.7%에 달함.

○ 오염 관리

2001년 구이저우성의 공업오폐수 배출 합격률은 58.21%로 전년대비 10.8% 포인트 증가했으며, 공업오폐수처리 프로젝트 92개를 완성함으로써 오폐수 처리능력이 11.60만톤/일로 확대됨

□ 대기 오염

○ 폐기 및 폐기 중 주요 오염물 배출

2001년 구이저우성 배출 폐기 중 이산화황 배출총량은 138만톤, 연기먼지 배출총량은 49만톤으로 각각 전년대비 4.8%와 2.1% 감소함. 공업폐기 중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57만톤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하고 연기 분진 배출량은 28만톤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함. 공업분진 배출량은 25만톤으로 전년대비 38.5% 감소했고 생활 및 기타 폐기 중의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81만톤, 연기분진 배출량은 21.4만톤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추세임.

○ 대기오염 관리

2001년 구이저우성 공업폐기 중 이산화황 제거율은 16.3%, 연기분진 제거율은 91.9%, 공업분진 제거율은 74.4%로 전년대비 각각 4.6, 2.9 및 20.2% 포인트 증가함. 공업폐기 관리항목은 77개로 폐기관리 능력이 350.0만 m^3/h 신규 증가함

□ 도시 환경

○ 대기환경

2001년말 연기·먼지 제한 구역 57개 지역(면적 203.4 km^2)을 지정했으며 고오염성 연료연소 금지구역 1개지(면적 1,891.5 km^2)를 지정함. 도시 가스사용율은 23.5%임.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준이(遵義), 안순(安順), 두권(都勻), 카이리(凱里), 퉁런(銅仁), 비지에(畢節), 썩이(興義), 츠수이(赤水), 칭전(淸鎮) 등 11개 도시 검측자료 통계분석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지역 주요 오염물은 이산화황과 공기중 부유물 인 것으로 나타남.

구이저우(貴州)성 11개 도시 중 리우판수이(六盤水)와 츠수이(赤水)지역의 대기가 가장 양호해 국가대기환경 2급 기준에 도달했으나 구이양(貴陽), 준이(遵義), 두궈(都勻), 카이리(凱里) 등 지역의 대기는 모두 국가 3급 기준을 초과함.

[이산화황]

2001년 11개 도시의 이산화황 연간 평균 농도치 범위는 0.011~0.160 mg/m³이고 구이저우성의 평균치는 0.083mg/m³으로 전년대비 24.5%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가의 2급 기준치(0.06mg/m³)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리우판수이(六盤水)의 이산화황 연간 평균치는 국가 1급 기준에 도달했고 비지에(畢節), 츠수이(赤水)는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함.

[이산화 질소]

2001년 11개 도시의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 농도치 범위는 0.012~0.031mg/m³이고 구이저우성의 평균치는 0.020mg/m³으로 국가의 1급 기준치(0.05mg/m³)에 도달했으며, 구이저우성 모든 도시의 이산화질소의 연간 평균치는 국가 1급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됨.

[대기중 총 부유과립물]

2001년 11개 도시의 대기 중 부유과립물 연간 평균 농도치 범위는 0.094~0.292mg/m³이고 구이저우성의 평균치는 0.185mg/m³으로 전년대비 20.4% 감소했으며 국가의 2급 기준치(0.20mg/m³)에 도달했음. 11개 도시 중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안순(安順), 두궈(都勻), 카이리(凱里), 상이(興義), 츠수이(赤水) 등 도시의 총 부유과립물 연간 평균치는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했고 기타 도시는 모두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며, 그중 제 2 도시인 준이(遵義)의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2급 기준의 0.46배임.

[먼지]

2001년 9개 도시의 월중 먼지 평균치는 3.97~15.39톤/km²이고, 전체 구이저우성 월중 평균치는 9.05톤/km²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함. 리우판수이(六盤水), 안순(安順), 두권(都勻), 싱이(興義)지역의 평균치는 중국 남부지역의 임시 기준(청결점면지량+3톤/km²/월)에 도달했고 기타 도시는 모두 평균치를 초과한 상황임.

[산성비]

2001년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준이(遵義), 안순(安順), 두권(都勻), 카이리(凱里), 퉁런(銅仁), 비지에(畢節), 싱이(興義) 등 9개 도시의 강우 연평균 pH 범위는 4.38~6.75이고 준이(遵義), 안순(安順), 두권(都勻), 카이리(凱里) 등 4개 도시의 강우 연평균 pH는 5.6(pH 평균치≤5.6인 강우를 산성비라고 함) 이하로 나타남. 전체 구이저우성의 강우pH 연 평균 수준은 5.59로 전년대비 0.09pH 감소함. 리우판수이(六盤水)를 제외한 기타 8개 도시에서 모두 산성비가 내렸으며 산성비 주기범위는 0~91.5%임.

○ 지표면 수질환경

구이저우성의 도시 오폐수 처리율은 3.66%으로 전년대비 0.56포인트 증가함. 도시 생활쓰레기의 영향을 받아 인구가 비교적 많고 공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도시유역 하천은 오염이 심각한 상황임. 구이저우성의 검측하천구간 중 호우장(赫章)현 및 나옹(納雍)현의 리우충허(六衝河), 호우장현과 마구허(媽姑河)의 수질이 가장 나빠 5급수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비지에(畢節)시의 바이푸어(白甫河), 구이양(貴陽)시의 칭수이허(淸水河), 준이(遵義)시 중심 구간, 칭수이허(淸水河)의 두권(都勻)구간, 카이리(凱里)시 바라허(巴拉河), 판(盤)현의 투어창(拖長江)강 및 리우즈허(六枝河) 등 하천의 수질은 오염도가 심각해 5급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 오염지표는 암모니아 질소임.

○ 소 음

2001년까지 구이저우(貴州)성은 37개 소음 기준구를 지정(면적 152.51km²)했으며 도시 주요 소음원은 생활소음과 교통소음임.

[도로교통 소음]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준이(遵義), 안순(安順), 두권(都勻), 카이리(凱里), 퉁런(銅仁), 비지에(畢節), 싱이(興義), 츠쭈이(赤水), 칭진(淸鎮), 런화이(仁懷) 등 12개 도시 도로교통 소음의 평균 소음 범위는 57.8~75.6db이고 구이저우성 전체의 교통소음 평균수치는 70.4db로 전년대비 2.4db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기준치(70db)를 넘어서고 있음. 국가기준을 초과한 도로구간은 전체 도로의 59.5%이며 전년대비 2.2%포인트 감소함. 꾸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비지에(畢節), 츠수이(赤水), 런화이(仁懷)를 제외한 기타 7개 도시의 도로교통 소음의 평균은 모두 국가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지역환경 소음]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준이(遵義), 안순(安順), 두권(都勻), 카이리(凱里), 퉁런(銅仁), 비지에(畢節), 싱이(興義), 츠쭈이(赤水), 칭저언(淸鎮), 러언화이(仁懷) 등 12개 도시의 지역환경소음 범위는 53.3~65.2db로 성 전체 평균 수준인 58.6db를 초과했으며 경도소음수준으로 전년대비 0.6db 감소함. 카이리(凱里)와 런화이(仁懷)지역의 소음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다른 10개 도시의 환경소음 급수는 기준을 초과함.

[지역별 소음 정도]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준이(遵義), 안순(安順), 비지에(畢節) 등 5개 도시의 거주지역 야간 평균 소음은 55.6~58.6db로 국가 기

준치(55db)를 초과함. 야간 평균 소음급수 범위는 42.9~55.7db이고 리우판수이(六盤水)지역은 국가의 기준치(45db)임.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준이(遵義), 안순(安順), 비지에(畢節) 등 5개 도시 2류구(혼합구)의 야간 평균 소음급수 범위는 58.9~58.6db이며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지역은 국가 기준치(60db)에 도달함. 야간 평균 소음은 48.4~60.5db이며 안순(安順), 비지에(畢節)지역은 국가 기준치(50db)에 도달함.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비지에(畢節) 등 3개 도시의 공업 지역의 야간 평균 소음은 60.0~62.0db로 국가 평균치(65db)에 도달함. 야간 평균 소음급수 범위는 52.2~58.7db이며 리우판수이(六盤水), 안순(安順)지역은 국가 평균치(55db)에 도달함.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안순(安順), 비지에(畢節) 등 4개 도시의 교통 주요간선 양측의 야간 평균 소음은 63.2~77.3db로 구이양(貴陽), 안순(安順)지역은 국가 평균치(70db)에 도달했음. 야간 평균 소음범위는 54.5~65.5db이며 구이양(貴陽), 안순(安順)지역은 국가 평균치(60db)에 도달함.

○ 생활 쓰레기

2001년 현재 구이저우성의 도시생활 쓰레기 처리 운송량은 164만톤,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23.4%로 전년대비 0.1% 포인트 증가함.

○ 녹 화

2001년 현재 1인당 공공녹지면적은 3.27m², 도시 녹화율은 25.5%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증가함.

□ 생태 환경

○ 토 지

2001년말 구이저우성의 경작지 면적은 183.23만ha, 실제 초원면적은 431만ha에 달함. 중국정부의 제2차 토양침식조사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수토(水土)유실면적은 73,180km²임. 2001년 구이저우(貴州)성의 유실토지 종합 관리면적은 1,190km²이며 이 중 양자강 유역은 906.8km² 주장(珠江)유역은 283.3km²임.

○ 삼 립

2001년 구이저우성의 삼림면적은 543만ha(관목지 91만ha), 삼림피복율은 30.8%, 목재 총 적재량은 2.1억m³임. 2001년 조림면적은 24.1만ha로, 이 중 재목이용림 7.27만ha, 경제림 4.66만ha, 방호림 11.88만ha, 연료용림 0.24만ha, 특종용도림 0.02만ha임. 입산금지를 통한 삼림육성(封山育林)면적은 21.5만ha임.

2001년 구이저우성의 12개 현에서 경작지를 삼림으로 환원하는(退耕還林還草) 시험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황산황무지의 조림 2.1만ha를 완성함. 그 중 퇴경환림(退耕還林還草)면적은 0.69만ha, 황산조림면적은 1.37만ha에 달함.

2001년 삼림화재는 700번이고 삼림화재 재해율은 0.028%임. 구이저우성의 삼림병충 및 쥐 재해면적은 15.0만ha이며 관리공사 면적은 11.1만ha임.

○ 생태 다양성

구이저우(貴州)성의 고급식물종수는 7,000종에 달하며 그중 국가의 중점보호 야생식물은 71종, 1급보호 14종, 2급보호 57종임.

증가), 환경보호관리 능력확대에 826.5만 위안 투입(전년대비 25.7% 증가), 수질-대기-고체오염방지분야 1.23억 위안 투입(전년대비 23.0% 감소)함.

공업오염 관리설비 운영비용은 3.7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3.45% 증가했으며 오염원 관리 자금은 당해년도 GDP의 0.3%를 차지함.(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

2001년 구이저우성의 오폐물 배출비용 징수총액은 8,549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증가했으며 오폐물 배출비용을 오염원 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5,65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43.4% 증가함

□ 구이저우(貴州)성 환경산업 10. 5계획(2001-2005년)

○ 목 표

- 2005년까지 주요 오염물의 배출량이 2000년 대비 10% 감소함.
- 산성비 통제관리 지역에서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8% 감소시킴
- 오폐수 중 유해오염물은 통제하며 위험폐기물 배출을 엄격히 제한
- 도시오폐수 처리율은 25%, 쓰레기 유해화 처리율은 10%에 도달토록함
- 삼협댐 영향지역의 생활오폐수 처리율 60%, 쓰레기 처리율 80%에 도달하도록 하며 공업오폐수 중 COD 배출량을 20%로 감소시킴. 삼협댐 상류지역은 생활오폐수 처리율 50%, 쓰레기처리율 70%에 달하도록 하고, 공업폐수 COD 배출량은 10%로 감소시킴.

- 구이양(貴陽), 준이(遵義), 리우판수이(六盤水), 안순(安順) 등 4대 환경보호 중점도시의 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고 구이양(貴陽), 준이(遵義), 리우판수이(六盤水)의 대기, 지표수, 소음 환경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구이저우(貴州)성의 기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함.

또, 대기오염 특히 이산화황 오염의 주요 원인인 화력발전과 석탄연소에 관해 구이저우성은 10. 5 계획기간 중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임.

- 1) 석탄층의 유황 함량이 3% 이상인 석탄광의 신규 건설 금지. 기 건설된 광산 중 석탄층의 유황 함량이 3% 이상인 석탄광은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광함. 신규 건설 및 재건 중인 광산 중 석탄층의 유황 함량이 1.5% 이상인 석탄광은 반드시 상응한 규모의 석탄 세척 및 선광 설비를 갖추어야함. 현재 운영중인 석탄광은 2005년까지 석탄 세척 및 선광설비를 보충 건설해야 함. 2005년까지 석탄원광의 세척선광 능력을 현재의 28%에서 38%로 제고함. 유황함량이 낮은 석탄개발을 추진하며 석탄가스를 개발 이용함.
- 2)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황과 연기분진의 배출량 통제관리 강화. 10. 5계획 기간 중 구이저우(貴州)성은 화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2005년에는 화력발전설비 용량을 지금의 320만kW에서 868만kW으로 증가할 계획임. 이에 따른 석탄 수요량은 2,100~2,3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산화황과 연기분진의 배출량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비(非)산성비지역과 저유황 석탄산지에 분포해야 함. 80% 이상의 발전설비가 유황함량 1.5% 이하의 석탄과 세척한 석탄을 사용해야 함. 신규, 개조 및 확대건설하는 화력 발전기 세트는 석탄의 유황함량이 1% 보다 큰 경우 반드시 탈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연기배출량은 국가 표준에 도달해야 함. 현재의 유황 함량이 1% 이상인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는 반드시 이산화황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함.

○ 지역별 목표

- 2005년 구이저우성의 도시오폐수 처리율은 25%에 도달하도록 하며 구이양(貴陽)시는 60%, 준이(遵義), 리우판수이(六盤水), 안순(安順) 등 3개 도시는 3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함. 기타 지방도시에는 1~2개의 도시오폐수 처리시설을 건설하며 기타 도시와 현(縣)급 도시는 생활오폐수 처리설비를 건설함.
- 2005년 구이저우성의 가스사용율을 65%에 도달하도록 하며, 구이양(貴陽)시는 90% 이상, 리우판수이(六盤水)는 80%, 준이(遵義), 안순(安順)은 75%에 도달하도록 함. 관광지역과 산성비 관리통제지역은 가스사용율이 70%를 상회하도록 함.
- 2005년 구이저우성의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율과 집중처리율을 각각 10%와 50%에 도달하도록 하며 구이양(貴陽)시의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80% 이상, 준이(遵義) 70%, 리우판수이(六盤水), 안순(安順) 15%에 도달하도록 함. 기타 지방도시 및 중점 관광지역에 쓰레기무해화 처리장 또는 집중처리장을 건설함.
- 2005년 각 도시의 1인당 공공녹지면적을 15m²에 도달하도록하며, 도시 녹화면적이 30%에 도달하도록 함
- 도시집중식 음용수 수원의 수질을 모두 표준에 도달하도록 함.
- 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는 80%, 준이(遵義), 안순(安順)과 지방의 중점 도시는 모두 연기분진 관리 지역을 건설해야 함
-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와 도시환경소음관리 강화함.

○ 구이저우성 주요 환경보호산업 목표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관리 계획>

지 표	2000년(만톤)	2005년 추정치(만톤)	2000년대비 2005년증감율(%)
이산화황 배출총량	145.01	127.60	-12.0
(산성비지역)	84.92	63.00	-25.8
연기먼지 배출총량	50.92	46.00	-9.0
공업분진 배출총량	40.62	37.00	-8.9
COD 배출총량	22.79	24.60	7.9
(공업분야)	5.15	12.17	-
(생활분야)	17.64	12.43	-
암모니아 질소 배출총량	3.74	3.55	-5.1
(공업분야)	2.20	2.09	-
(생활분야)	1.54	1.46	-
공업고체폐기물 배출총량	410.70	360.00	-12.3

자료원: 구이저우성 환경보호 10. 5계획(貴州省環境保護十五計劃)

<중점 프로젝트>

프로젝트		건 수	투자액(억위안)
지역별 대기환경 관리	산성비 관리지역의 대기관리	10	14.58
	청결 에너지원	1	1.20
	기타 대기 관리	2	1.59
	수질오염 관리	1	5.51
도시환경 종합 관리	생활 쓰레기 관리	6	3.67
	도시오폐수 처리	16	13.16
생태환경 관리, 정책시범, 능력건설		12	7.02
합 계		48	46.73

3. 주요 기업

□ 구이양 수처리설비창(貴陽水處理設備廠)

- ◇ 담당자: 우신광(吳心廣) 廠長, 후원(胡文) 經營 廠長
- ◇ 설립연도: 1985년
- ◇ 취급품목: 오폐수처리설비
- ◇ 주 소: 貴陽市 華溪大道 北段 560 號 (郵編: 550003)
- ◇ 전 화: (86-851) 5104-436/ 5116-933
- ◇ 팩 스: (86-851) 5116-933
- ◇ E-mail: spear@public.gz.cn

구이양 수처리설비창(貴陽水處理設備廠)은 구이양공구창(貴陽工具廠; 국유기업) 산하업체로 주로 오폐수처리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를 생산하고 급수와 오폐수처리 업무를 취급함. 동사는 현재 중국 환경보호협회 회원이며 구이저우성에서 가장 먼저 오폐수처리 업무를 시작한 업체 중 하나임.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YZJ브랜드 기술은 1987년 구이저우(貴州)성 정부 과학위원회의 인증을 받고 1999년에는 ISO 인증을 획득함. 현재는 수처리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고체쓰레기처리 및 대기오염처리분야로 진출할 예정임. 모회사인 구이양공구창(貴陽工具廠 ; 중국 6대 공구 생산업체의 하나로 주로 트럭, 자동차 및 공정차 등을 생산)이 보유하고 있는 공구생산 기술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설비를 생산하고 있음. 또, 수도물 처리(2만톤 이하), 생활 및 공장오폐수처리, 수환경 처리 등 수처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급엔지니어 3명, 전문기술인원 10명 및 시공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구이저우성(貴州)성은 기본적으로 생활오수 처리장이 없으며, 공업기업의 80% 정도가 환경보호 설비가 없는 상황임. 중국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서부지역의 환경보호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서부지역은 워낙 지역이 넓고 관련 범위가 커서 구이저우성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미미한 상황임.

구이저우성 환경보호 관련 업체들은 영세 소규모 업체임. 이때문에 성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의 경우, 연해지역의 업체가 입찰공고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음. 구이저우(貴州)성은 최근예야 도시오폐수처리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2001년에 첫번째 오폐수처리장(구이양 오폐수 처리 공장)이 건설됐으며 이외에도 3개 오폐수처리장 건설 중임.

구이저우성은 양자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구이저우성을 흐르는 우강(烏江)은 양자강 상류의 가장 큰 지류 중 하나로 오폐수 처리가 중시되고 있음. 구이저우성은 87개 시(市)와 현(顯)급 구성돼 있으며 모두 오폐수처리장이 필요한 상황임

구이저우성의 시(市)와 현(縣)들은 규모가 비교적 작아 2~3만톤/일, 5만톤/일, 8만톤/일, 10만톤/일 등 규모의 오폐수처리장이 가장 적합하며 최대 20만톤/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우강(烏江)유역의 40개현은 향후 5년내에 오폐수처리장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

<오폐수처리장 규모>

- 현(縣)급: 3만톤/일
- 중소도시(市)급: 5만톤/일
- 진(鎭)급 및 공장: 1만톤/일 (수요가 가장 많음)

한국업체가 구이저우성으로 진출하려면 선진기술과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구비해야 함. 한국제품이 구이저우성으로 진출한 경우가 있으나 가격이 높고 합작문제로 실패함(예:도살장 오수처리설비로 한국측이 100만 위안을 투자하고 중국측이 30만 위안을 투자). 현재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해 있으며 핵심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기타 부분은 국내생산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이 회사는 외국의 오폐수처리장(중소형 수천톤~8만톤 규모)기술과 관리경험에 관심이 크며 기술합작, 자금투입, 대리판매 등 방식이 모두 가능함. 선진기술과 가격경쟁력은 필수 사항임.

□ 꾸이뤄 공무환경보호설비창(貴鋁工貿環保設備廠)

- ◇ 담당자: 니에이(聶毅) 총경리, 치모진(戚茂君) 廠長, 송웨이(宋衛) 副經理
- ◇ 설립연도: 1999년
- ◇ 개 요 : 동사는 중국 4대 알루미늄 공장의 하나인 구이양뤄창(貴陽鋁廠)의 산하 업체임
- ◇ 취급품목: 대기오염 처리설비, 탈황설비
- ◇ 주 소 : 貴陽市 白雲區 貴陽 鋁廠(郵編: 550000)
- ◇ 전 화 : (86-851) 4862-541/ 4865-163/ 4898-039
- ◇ 팩 스 : (86-851) 4865-039
- ◇ E-mail: 6868sw@163.com

중국 4대 알루미늄 공장 중 하나인 구이양뤄창(貴陽鋁廠) 산하업체이며 1999년부터 환경보호산업을 시작함. 주로 포대식 분진제거설비와 탈황설비를 연구, 생산함. 현재까지는 구이양뤄창(貴陽鋁廠)내(공장인원이 약 3만명 정도이며 산화알루미늄 80만톤, 전해알루미늄 40만톤 생산) 분진제거와 탈황업무를 취급해 옴.

엔지니어, 기술인원 및 기타 직원 117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GCD, DYD, GFD 등 규격의 포대식 분진제거설비를 연구생산함. 1999~2001년간 구이양뤄창(貴陽鋁廠) 인근의 대기오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

중국은 '60년대부터 대중형 공업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 이들 전통기업이 대기오염의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음. 현재 구이저우 지역의 이산화황의 비중은 72%, 대기오염물은 55%로 국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이저우성은 석탄매장량이 풍부하나 소규모 개인채굴 광산이 많아 동일한 보일러에 공급되는 석탄의 품질(유황함량)에 차이가 큰 편이므로 탈황처리 문제가 심각함. 구이양취창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국측과 기술협력 또는 합작생산을 희망함. 현재 이 회사가 사용하는 방식은 포대식 저압펄스(脈沖) 여과설비임. 또, 이 회사는 서로 다른 품질의 석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처리(탈황)기술에 관심이 높음. 한국의 선진기술 도입 또는 기술합작을 통한 설비 생산 모두 가능하다고 밝힘. 이외에 오폐수처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과 합작을 희망함.

□ 구이저우 항과환경보호기계공정유한공사
(貴州航發環保機械工程有限公司)

- ◇ 담당자: 후보(胡波) 總經理, 총야페이(叢亞飛) 공정사
- ◇ 주 소: 貴陽市 延安西路 67 號 衆廈大樓 909室(郵編: 550003)
- ◇ 전 화: (86-851) 5976-159
- ◇ 팩 스: (86-851) 5976-154
- ◇ 취급품목: 병원쓰레기 등 특수 유독쓰레기 처리
- ◇ E-mail: hfhb@public.gz.cn

구이저우항공발동기창(貴州航空發動機廠; 국유기업) 산하업체로 유독쓰레기폐기물 처리설비 개발 및 생산업체임. 이 회사는 1992년부터 제품개발을 시작해 현재 유독위험쓰레기 소각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한 제품은 중국내에서 인정받고 있음. 이 회사에서는 다실소각방식(多室爐聯排)¹⁾기술을 응용, 이미 수십개 소각로 공사에 적용해 좋은 평을 얻고 있음.

1) 1개 설비내에 여러 개의 작업 룸이 있으며 각 룸이 각각의 작용을 하는 방법으로 작업절차는 1차 소각후 소각폐기물을 2차소각하는 방식이며 각 룸의 처리방식은 한국의 준건식(準乾法)과 유사함.

중국은 병원에서 배출되는 유독쓰레기 폐기물을 완전 폐기하지 않고 회수한 후, 간단한 세척과정을 거친 후 재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90년대 들어 병원쓰레기를 반드시 소각처리하도록 규정화함.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준은 '2001기준'으로 유럽의 동일기준보다는 약간 낮으나 중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높은 편이어서 많은 소각로 공사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아직까지는 유독쓰레기 폐기물분야의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관련 부문 업체 수가 적고 대부분 미국, 일본과 유럽의 설비(기술)를 도입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의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등 지역에 일본의 미쓰비시사가 진출해 쓰레기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음. 한편, 충칭강티에(重慶鋼鐵)사는 프랑스 설비를도입, 쓰레기 소각을 진행하고 있음. 중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쓰레기 처리분야는 시장전망이 비교적 유망함.

□ 구이저우 창청환경보호설비창(貴州長城環保備廠)

- ◇ 담당자: 리우페이(劉飛) 董事長
- ◇ 주 소: 貴陽市 185# (南廠路44) (郵編: 550002)
- ◇ 전 화: (86-851) 5793-419/ 5796-882
- ◇ 팩 스: (86-851) 5765-822(EX. 812)
- ◇ 취급품목: 오폐수처리, 대기오염처리
- ◇ 판매액: 5,000만위안/년

구이양군구(貴陽軍區)산하업체로 오폐수(병원 유독오폐수처리가 주요)처리, 쓰레기 소각, 소독관련 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업체임. 과거 군수업체였으나 현재 민용기업으로 전환 중이며 2년내에 완전히 전환할 예정임. 1988년에 설립돼 현재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쿤밍(昆明), 청두(成都)에 자회사 및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함. 제품은 대만, 홍콩, 마카오, 서장 등지에 판매하고 있음.

직원 100여명, 고급엔지니어 1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영업액은 5,000만 위안 정도임. SDH오폐수정화기, JY-V형 병원용 쓰레기 소각설비, JY-IV형 병원용 소각로 등 9개의 특허제품을 개발 및 사용함. 이 회사의 핵심기술은 오폐수 2차 회수이용(重水回用)이며 유독오폐수처리 후 소독을 거친 뒤 직접 마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고체쓰레기 처리설비는 국가표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굴뚝없는 소각설비(소각시 발생하는 연기를 설비내에서 재처리해 밖으로 배출하지 않음)를 개발, 수출을 추진 중임

[협력 희망 분야]

- 유기물쓰레기(식당음식쓰레기) 처리기술
- 오폐수 미생물 처리기술
- 쓰레기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처리방법.

□ 구이저우녹색환경보호설비공정유한공사
(貴州綠色環保設備工程有限責任公司)

- ◇ 담당자: 장빙신(張冰心) 부총경리, 탕야오화(唐耀華) 고급 엔지니어
- ◇ 주 소: 貴陽市富水南路196號全林國際廣場A棟10F(郵編: 550002)
- ◇ 전 화: (86-851) 5809-355/ 5809-277/ 5809-289
- ◇ 팩 스: (86-851) 5809-606
- ◇ E-mail: ghome@public.gz.cn
- ◇ http: www.ghome.com.cn
- ◇ 설립년도: 1992
- ◇ 등록자본금: 100 만위안
- ◇ 년영업액 : 1,000 만위안 (향후 3년내 5,000만 위안 목표)
- ◇ 취급품목: 오폐수처리설비 생산, 수입 제품 대리판매

동사는 환경보호설비공정회사, 설계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음. 1992년 설립돼 제품생산, 판매, 프로젝트 공사업무 등 종합 환경보호업체임. 쓰촨(四川), 윈난(雲南), 충칭(重慶), 우한(武漢), 란저우(蘭州) 등 지역에 자회사 및 사무소를 설립했으며 40명에 달하는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 미얀마에 제품을 수출 중임.

동사는 주로 고농도 오탁공업오폐수, 유기오폐수, 각종 무기오폐수 및 각종 공업용수와 민용 수도물처리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특허제품을 연구개발함. 동사가 개발한 YZJ형 고농도 오탁정화기는 보일러 스타일의 수력을 이용한 분진제거, 오폐수 처리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협력 희망 분야]

- 제지공장 오폐수처리기술 또는 설비(중국의 제지펄프는 목재 펄프가 아니라 갈대, 짚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돼 종이 생산시 찌꺼기가 많고 물 오염이 심함)
- 황린, 시안화물이 포함된 오폐수 처리(광산 채광에 따른 오폐수)
- 암모니아, 질소가 포함된 오폐수 처리
- 오폐수처리 관련, 이외에도 1~2톤/시 정도의 풍경구, 관광지역 오폐수 단독처리 기술, 5~100톤/시의 주민생활지역 소형 오수처리 분야
- 탈황처리
- 소음(공업설비, 공사소음, 오락정소 등)
- 화학, 염색 공장 등 특종공업폐수처리

- 급수 또는 오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여과막(膜) 기술(0.5도이하)(중국제품이 기준미달로 독일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구이저우성은 아파트용, 빌딩용 소형 오폐수 처리시스템(5톤~100톤/h)에 대한 수요가 많음. 또,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코스지역의 주택(호텔, 식당 등)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처리한 후 바로 양어장이나 수영장으로 끌어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음. 또, 구이저우(貴州)성은 목축업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소규모 도살장이 많아 이와 관련된 오폐수처리가 심각한 문제임. 도살장의 오폐수 배출량은 1톤, 3톤 및 5톤/h의 규모임. 현재 중국에는 수천개의 제지공장이 있으며 제지공장의 오폐수처리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이저우성에도 소형(개인) 제지공장이 적지 않으며 국가에서 '제지공장은 반드시 오폐수처리설비를 장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은 오폐수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오폐수처리 설비가 고가여서 오폐수 처리비용이 소형 제지공장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외에도 중국, 구이저우성에서는 탈황처리에 전통적인 수력을 이용해 분진을 제거하고 있으나 효과가 좋지않아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술제조창, 담배제조창, 식품제조창의 탈황문제로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의 경우 10~20톤 규모의 보일러가 5개가 있으나 아직까지 탈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중국에도 많은 외국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나 시장수요에 부합되지 못하는 편임. 러시아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나 외관이 우둔하고 조작이 불편하다는 평임. 일본제품은 디자인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하나 사용기간이 짧고 이미 중국내에서도 뒤떨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독일제품은 기술이 좋고 디자인도 우수하며 내성이 강하나 가격이 고가임.

□ 구이저우 등웨이실업유한공사(貴州東偉實業有限公司)

- ◇ 면담자: 장즈(張直) 총경리, 스더량(施德讓)
- ◇ 주 소: 貴陽市 延安西路67號衆慶7樓(우편번호: 550003)
- ◇ 전 화: (86-851) 5974-455/ 5956-508
- ◇ 팩 스: (86-851) 5974-455
- ◇ E-mail: china-dawn@21cn.com
- ◇ 홈페이지: www.gzdw.com
- ◇ 설립연도: 1988
- ◇ 종업원: 54명(고급엔지니어 10명)
- ◇ 취급품목: 오폐수처리, 수돗물 정화처리

등웨이실업(東偉實業)의 산하업체로 주로 오폐수처리 분야의 기술개발, 제품생산, 프로젝트 자문서비스 등에 종사함.

이 회사가 연구 개발한 일체화(一體化) 고농도오탁 지속형 정화기, 산화파이프(OTP)유기오폐기 처리설비 등은 중국 건설부와 구이저우성 관련 기관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상하이, 심천, 하남, 광서 등지로 판매 중이며 미얀마에 수출하고 있음. 또, 수도물정화 처리조 공사를 다수 진행했으며 구이저우성 각 지역의 정부기관과 환경보호관련 기업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협력 희망 분야]

- 도살장, 염색공장, 식품공장, 석탄광의 오폐수 처리기술 및 설비
- 황린, 암모니아, 질소가 포함된 생활오폐수 처리기술(동사의 경우 도살장, 식품공장의 오폐수처리 중 기타 성분에 관한 처리는 중국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나 유독 암모니아 및 질소 함량지표는 기준에 도달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처리기술이요구 됨)

- 삼투 및 반투과 여과 기술(물속의 유기물은 통과시키지 않고 물만 통과시키는 막기술)
- 제지공장 오폐수처리기술

□ 구이저우 청원수처리설비유한공사
(貴陽清源水處理技術設備有限公司)

- ◇ 면담자: 루용싱(陸永興) 총경리, 정빈(鄭斌) 경리
- ◇ 주 소: 貴陽市飛山街90號/ 建築設計院6F(우편번호: 550001)
- ◇ 전 화: (86-851) 5280-226/ 5280-102
- ◇ 팩 스: (86-851) 5280-226/ 5280-102
- ◇ E-mail: luyongxing9288@sina.com
- ◇ 설립연도: 1997
- ◇ 취급품목: 오폐수 처리

구이양(貴陽)시 건축설계원 산하업체로 주로 오폐수처리와 고체쓰레기처리 관련 업무에 종사함. 1997년 설립돼 건축설계원을 통해 환경보호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주로 오폐수처리, 쓰레기처리장 등 설계업무에 종사함. 한국의 펌프, 송풍기, 산소유입 설비, 진흙처리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에 관심이 있음.

<도시오폐수 처리장, 도시쓰레기처리장의 건설형식>

프로젝트 건의서제출 → 프로젝트 입안서 → 관련 기관에서 프로젝트 입안 → 사업타당성평가, 환경 평가 → 초보적 설계(최종설계시 초보설계와 자본투입액 차이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시공설계도작성 → 설비 입찰

□ 준이 란티엔환경보호기술유한공사(遵義藍天環保技術有限公司)

- ◇ 면담자: 리우자이(劉家易) 董事長, 조우중칭(周忠慶) 經理
- ◇ 주 소: 遵義市香港路276號3層 (工商銀行對面)
- ◇ 전 화: (86-852) 8612-655 EX 2193/ 8622-001
- ◇ 팩 스: (86-852) 8622-001
- ◇ E-mail: zylthb@public.zy.gz.cn
- ◇ 홈페이지: www.zylthb.com.cn
- ◇ 취급품목: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소음기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제품 생산업체로 이 회사가 연구개발한 ZQ형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는 HRCJ007-1999기술기준에 도달했으며 구이저우(貴州)성 환경보호협회와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의 인정을 받음. 유럽 등 국가에서는 배기가스 정화기 내부에 귀금속(금, 은) 등으로 처리하기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으나 이 회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내부에 희토(稀土)를 사용, 생산해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비교적 우수함.

□ 구이저우 준이신환쓰레기처리장 (貴州遵義市欣環垃圾無害化處理廠)

- ◇ 면담자: 푸시엔용(付賢勇) 機電處, 후량춘(胡良春) 판공실 주임
- ◇ 주 소: 遵義市 高橋鎮 十字村
- ◇ 전 화: (86-852) 857-0905/ 892-8828
- ◇ 팩 스: (86-852) 892-8828
- ◇ 업체성격: 쓰레기 처리장

준이는 꾸이양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으며 준이시 중심에서 약 15 km 정도 떨어진 곳에 구이저우성 시험케이스인 쓰레기 처리장 공사가 진행중임.

이 쓰레기 종합 처리장은 서남지역에 가장 큰 쓰레기처리장이며 2000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4년 6월까지 약 4년여에 걸쳐 공사가 진행 될 예정임. 총 투자액은 1.4억 위안으로 스페인정부 차관을 이용, 쓰레기처리장의 1차 쓰레기 분류처리 시설은 스페인설비를 수입하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중국산제품을 사용할 예정임, 2차 공사의 미생물 발효처리와 미생물 비료생산 부분은 중국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의 기술이 성숙하지 못해 외국 선진기술 또는 설비구입 가능성이 있음

<1차공사시스템>

- 최초의 쓰레기 선정시스템, 발효시스템, 소각시스템 (100-200톤/일) 최종 분류 시스템, 쓰레기 매립장 건설

<2차공사시스템>

- 복합 혼합비료 생산라인, 인비료 생산시스템, 플라스틱 재생 시스템, 쓰레기 종합회수 이용시스템, 미생물 번식 및 미생물 비료생산 시스템 등

천연 위생매립지는 약 2mm 두께의 HDPE막을 깔고 그위에 별도의 막을 입힌 후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침출수 집중 파이프도 HDPE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도시생활 쓰레기 처리량은 평균 26.7만톤/년, 각종 유기복합비료 생산량은 평균 6.82만톤/년, 각종 쓰레기 회수량은 평균 3,153톤/년에 달해 약 60만 인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쓰레기 감소율은 54.4%이고 무해화처리율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투자·자원 정보

中 2003년 1월 1일부터 110여개 수입품에 영세율 적용

KOTRA 상하이 무역관

중국은 WTO 가입 이행약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반제품 銀, 단결정반도체 절단기기, 워드프로세서, 팩스, 핸드프리, 워키토키, 유리 연마용 선반 등 110여개 수입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02년 평균 관세율을 12.7%로 인하했으며 2003년 11.5% → 2004년 10.6% → 2005/2006/2007년 10.1% → 2008년 10%까지 평균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주요 수입품에 대한 수입쿼터 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아래와 같이 완화할 예정이다.

- 완성유(成品油) : WTO 가입 당시 쿼터량인 1,658만톤에서 매년 15%씩 증가하고 2004년 1월 1일부로 수입쿼터를 철회할 예정
- 자동차 및 부품 : WTO가입 당시 수입쿼터액인 60억 달러에서 매년 15%씩 증가함.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승용차와 배기량 1,500~2,500cc인 지프는 2005년까지 수입쿼터를 해제하고 기타 차량은 2004년까지 해제함. 주요 부품류는 2003년에 쿼터해제 예정
- 카메라 : WTO가입 당시 수입쿼터액인 천 4백만 달러에서 매년 15%씩 증가함. 2003년 1월 1일부로 수입쿼터 해제
- 식물유 : 콩기름의 관세쿼터액이 2002년 240만톤, 2003년 260톤으로 2006년 콩수출입을 자유화할 예정

자료원: 東方網(2002.12.13)

KOTRA 「최신 중국 조세제도 해설집」 발간

중국의 현행 세제 체계, 주요 13개 세목, 세수 우대정책 등 수록
- 중국 조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

KOTRA 해외조사팀 정도숙

우리 기업들이 중국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현행세제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모아놓은 자료집이 나왔다.

KOTRA(www.kotra.or.kr, 사장 : 吳盈敎)는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되는 13개의 주요 세목과 주요 세수 우대정책을 수록한 『최신 중국 조세제도 해설집』을 발간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는 올 10월 말 현재 62억 6,200만 달러(7,100건)로 '92년 한·중수교 당시보다 30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원년인 올 10월까지 대중국 투자 규모는 1,010건, 5억3,200만 달러로 건수와 금액 모두 줄곧 제 1위의 투자대상국 자리를 지켜 온 미국 투자를 앞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국 투자의 양적인 성장 속에서도 대다수 투자기업들이 중국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중국이 최근들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기업에게 있어 중국의 조세제도는 여전히 어렵고 생소한 분야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 자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조세제도에 대해 손쉽게 접근하도록 중국의 조세체계 소개 및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13개 주요 세목에 대해 상세한 해설과 함께 세액 산출요령도 덧붙였다.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증치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17%가 작용되며, 소비세는 화장품(30%)을 필두로 자동차(3%~8%), 오토바이(10%), 자동차 타이어(10%), 귀금속 및 보석류(5%~10%), 술, 담배, 연료 등에 부과된다. 특이한 것은 자동차보다 오히려,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소비세가 높은 것과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없다는 점이다.

또,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감면 내역도 수록해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 입지 선정시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WTO 가입 후 확대 개방되는 중국의 통신, 금융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해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국이 중국기업에는 33%를 적용한 법인소득세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15%를 적용해 주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져 가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조치 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목 차】

제 1장 중국의 조세 체계

1. 세제의 종류
2. 입법 체계
3. 협의 세수

제 2장 중국의 현행 세제

1. 증치세
2. 소비세

3. 영업세
4.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5. 개인소득세
6. 자원세
7. 도시부동산세
8. 토지증치세
9. 차량구입세
10. 차량·선박 사용면허세
11. 선박톤세
12. 인지세
13. 부동산 취득세

제 3장 주요 세수 우대정책

1. 농림·목축·어업
2. 에너지·교통 운수업
3. 금융·보험·증권업
4. 과학기술 및 신산업
5. 교육·문화·체육·위생
6. 사회보장·복지
7. 수출 세제 혜택
8. 수입 세제 혜택
9. 지역별 세제 혜택
10.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의 감·면세

부록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 국가세무총국 조직도
 중국 세무계통 조직도

<요 약>

1. 중국 세제의 종류

현행 중국의 세수 제도에는 29종의 세목이 있으며 그 특성과 작용에 따라 아래의 7가지로 분류됨

- 유통세류 :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에 해당), 소비세, 영업세, 관세 등 4종류의 세목이 포함됨
- 소득세류 : 중국의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연합경영기업, 주식제 기업 등 각종 유형의 내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3종류의 세목이 포함됨
- 자원세류 : 자원세와 도시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등 2종류의 세목이 포함
- 행위세류 : 차량·선박사용세(車船使用稅), 차량·선박사용면허세(車船使用費), 선박톤세, 인지세(印花稅), 부동산 취득세(契稅), 증권교역세, 도축세(屠宰稅), 연회세(筵席稅 : 소비 절약을 위해 각종 연회 등 행사시 과세하는 세금으로 외국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 8종류의 세목이 있음
- 농·목축업세류 : 농업세(농업특산세)와 목축업세 등 2종류의 세목이 포함되며, 농업소득이나 목축업 소득이 있는 기업, 사업단위 그리고 개인에게 부과됨

2. 중국의 현행 세제

□ 증치세

- 증치세(增值稅)는 상품 생산 및 판매 과정, 용역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임
- 중국내에서 상품 판매, 화물 수입, 가공, 수리 및 용역을 제공한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형 기업,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및 개인사업자와 기타개인이 납세의무자임

증치세 과세 대상 및 세율표

과세 대상	과세 범위	세율(%)
수출화물	각종 수출 화물. 단, 황금, 해외 원조용 화물 및 국가 수출금지 화물(현재 천연 우황, 사향, 동, 동합금 및 백금 등)은 제외	0
농산품	식량, 채소, 담배잎(다시 구운 담배잎 제외), 찻잎(각종 미가공 차 포함), 원예식물, 약용식물, 기름 원료식물, 섬유작물, 당원료식물, 임업제품, 기타식물, 수산품, 축산품, 동물피혁, 동물털로 만든 직물 및 기타 동물조직	13
식량 재가공품	면, 교자피, 훈둔피, 면피, 쌀가루 등	13
식용 식물유	들깨기름, 땅콩기름, 콩기름, 유채기름, 해바라기기름, 목화씨기름, 옥수수기름, 차기름 및 참깨기름, 이와 같은 원료를 혼합해 만든 기름	13
수돗물		13
난방, 증기, 온수 및 냉방	공업용 잔열을 이용해 생산된 난방, 증기, 온수	13
석탄가스	코크스로 가스, 발생로 가스 및 액화 가스 포함	13
석유액화가스		13
천연가스	천연가스전 생산가스, 석유전 생산가스, 석탄전 생산가스 및 기타 천연가스	13
메탄가스	천연 메탄가스 및 인공 메탄가스 포함	13

과세 대상	과세 범위	세율(%)
주거용 석탄제품	연탄, 조개탄, 번개탄 등	13
도서, 신문, 잡지	우체국, 정보통신 기관이 발간한 신문 잡지 제외	13
사료	단일사료, 혼합사료 및 배합사료. 단, 동물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양식 및 사료 첨가제는 제외	13
비료	질소, 인, 칼륨 비료, 복합비료, 미량원소 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13
농약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식물생장 조절제, 식물성농약, 미생물 농약, 위생용 약품 및 기타 농약원료약품, 농약제제	13
농업용 기계	경운기, 밭갈기용기계, 경지정리용기계, 파종기, 식물보호 관리기계, 수확기계, 관개용 기계, 농부산물 가공기계, 농업용 운송기계(농업용 자동차제외), 축산용 기계, 어업용 기계(동력어선 제외), 임업용 기계(삼림 벌목기 및 집목기계 제외), 소형 농기구(농기구 부품 제외)	13
농업용 필름		13
금속광물제품	흑색금속광 및 유색금속광물의 선광(選鑛)제품	13
비금속광물 선광제품		13
석탄	원탄, 선탄(選炭), 세탄(洗炭)	13
원유	천연원유 및 인조원유	17
암염		17
기타화물	납세자가 판매 또는 수입하는 상기 화물 이외의 기타 화물	17
가공·수리, 용역		17

○ 세액 계산 방법

- 일반 납세자의 세액계산 방식

- 먼저 당기 매출세액(銷項稅額)과 매입세액(進項稅額)을 계산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실제 납부세액이 됨

【납부 세액 계산 공식】

$\begin{aligned} \text{납부 세액} &= \text{당기 매출세액} - \text{당기 매입세액} \\ \text{※ 당기 매출세액} &= \text{당기 매출액} \times \text{적용세율} \\ \text{※ 당기 매입세액} &= \text{당기 매입액} \times \text{적용세율} \end{aligned}$

- 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했거나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그 판매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서 구매자측으로부터 수취한 증치세 세액을 매출세액이라 함

【납부 세액 계산 공식】

$\text{매출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세율}$

○ 감 · 면세

- 농업(묘목업, 양식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생산 단위와 개인이 생산해 판매한 1차 농산품
- 원료를 수입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화물
- 중국의 외국인투자항목 및 국내투자 장려항목 중 투자총액 범위에서 수입되는 것
- 『국가첨단기술제품목록』 중의 제품 생산용 설비 및 부품을 수입할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수입할 경우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투자 장려류 및 제한류 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R&D)와 선진기술형 및 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을 개조하기 위해 비준된 생산경영 범위내에서 투자총액 이외의 자기 자금으로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센터(R&D)가 투자 총액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등

□ 소비세

- 소비세는 법이 규정하는 소비제품 또는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임
- 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소비세 과세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형 기업,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개인사업자 및 기타 개인임. 또, 소비세 과세대상 제품을 위탁 가공하는 기업, 단위와 개인도 소비세 납세의무자임
- 소비세 과세대상 항목은 모두 11개이며 각각 비례세율과 고정세액 표준을 채택하고 있음
- 세액 계산 방법
 - 소비세는 종가제(從價定率)방식과 종량제(從量定額)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해 납부 세액을 산출함
 - 종가제 계산방식은 과세표준으로 삼는 과세대상 제품의 판매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함
 - 종량제 계산방식은 과세표준으로 삼는 판매수량에 규정된 세액을 곱해 납부세액을 결정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대상 품목의 판매액} \times \text{적용 세율} \\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대상 품목의 판매량} \times \text{적용 세액표준} \end{aligned}$
--

○ 감·면세 및 환급

- 수출입 경영권을 갖고 있는 생산기업이 자체 수출 또는 위탁을 통해 수출한 과세 대상 소비제품은 실제 수출수량에 따라 소비세가 면제됨
- 원료를 수입·가공한 소비세 과세대상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소비세가 면제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가공무역(來料加工, 進料加工)등 방식으로 수입한 소비세 과세대상 제품은 수입 단계의 소비세 징수가 면제됨. 또, 소비세 과세제품을 가공 수출한 경우, 가공 또는 위탁 가공된 소비세 과세 제품은 소비세 징수가 면제됨

□ 영업세

- 영업세는 중국 법률이 규정한 영리사업과 경영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세목임
- 중국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을 판매한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형 기업,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개인사업자 및 기타 개인이 영업세 납세의무자임
- 영업세는 모두 9개의 과세대상 항목이 있으며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음(3~20%)
- 세액 계산 방법

- 납세자가 제공하는 과세용역,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판매의 영업액에 규정세율을 적용해 영업세액을 결정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text{납부세액} = \text{영업액} \times \text{적용세율}$

□ 감 · 면세

-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제공하는 용역, 혼인중개업 및 장의사 업무
-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사회에 제공하는 용역
- 비영리성 의료기구, 질병통제기구, 부녀 및 아동보건기구 등의 의료 및 위생기구들이 국가가 규정한 가격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제공한 의료 서비스
-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 기계를 이용한 경작, 배수관개, 병충해 방제, 식물보호, 농업 및 목축업 보험과 그와 관련된 기술훈련업무, 가축, 축산, 수생동물의 종자배양 및 질병방제 등

□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 징수되는 세목임
-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 외국기업

- 중국 국내에 기구, 사업장을 설립해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기구, 장소는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기구를 포함함
- 위의 기구, 장소란 관리기구, 영업기구, 사무기구와 공장, 자연자원 채굴 장소, 건축도급, 조립 및 설치·탐사공정 작업장소, 노무제공 장소와 영업대리인(즉, 외국기업의 위탁을 받아 경영활동에 대리 종사하는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말함)을 뜻함

○ 과세대상 소득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구·사업장에서 생산·경영활동에 따른 소득과 중국 국내 및 국외에서 중국 국내 기구·사업장과 실제 관계가 있는 이윤(배당), 이자수입, 임대료, 특허권 사용비 및 기타 소득
- 중국 국내에 기구·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취득한 다음 소득은 과세대상 중국 국내 소득원천에 해당됨
 - 중국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주식배당금)
 - 중국내에서 취득한 예금 및 대출 이자, 채권이자 및 연체이자
 - 중국내의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취득한 임대료
 - 중국 기업에게 특허권, 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사용료
 - 중국내 건축물 및 그 부속 시설, 토지사용권 등의 재산 양도로 취득한 수익
 - 재정부가 규정한 소득세 징수 대상 기타 국내 소득

○ 세액 계산 방법

- 과세대상 소득액의 범위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의 과세 근거는 납세자가 매 납세연도에 생산, 경영을 통해 획득한 수입 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대상 기준 금액으로 함
- 상기의 생산, 경영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종사하는 제조업, 채굴업, 교통운수업, 건축설비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水利業), 상업, 금융업, 서비스업, 탐사개발작업 및 기타 영역의 생산 및 경영으로 얻어진 소득을 가리킴
- 기타소득에는 이윤(주식배당소득), 이자, 임대료, 재산양도소득, 특허권 및 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의 제공 또는 양도를 통한 수익과 영업외 수익 등 소득이 포함됨

- 과세대상 소득액의 계산 공식

【제조업】

과세대상 소득액=판매이윤+기타 업무이윤+영업외수입-영업외지출
판매이윤=제품판매액-제품판매원가-제품판매세금-판매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상업】

과세대상 소득액=판매이윤+기타 업무이윤+영업외수익-영업외지출
판매이윤=매출액-원가-판매세금-판매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서비스업】

$\begin{aligned} \text{과세대상 소득액} &= \text{판매이윤} + \text{기타 업무이윤} + \text{영업외수익} - \text{영업외지출} \\ \text{판매이윤} &= \text{매출액} - \text{원가} - \text{판매세금} - \text{판매비용} - \text{관리비용} - \text{재무비용} \end{aligned}$
--

○ 감 · 면세

- 아래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됨
- 기계제조, 전자공업, 에너지공업(석유 및 천연가스 채취 제외), 야금(희귀광물 및 귀금속 채굴 제외), 화학, 건축자재 공업, 경공업, 방직, 포장공업에 종사하거나 의료기기 및 제약업, 농림목축업 및 어업, 수리(水利), 건축업, 교통운수업(여객 제외)에 종사하는 기업
-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과학기술 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 컨설팅, 생산설비 및 정밀기계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및 국가가 지정한 타 분야의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예 : 건축, 설치, 조립 공정의 설계 및 해당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는 기업, 양식업, 생산기술 연구 및 개발, 운송 및 저장 설비를 보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는 운수창고업 등)중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기업
- 신설된 소프트웨어 회사가 상기와 같은 세제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경영기한 제한은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서부지역의 중국 『국가투자장려항목』에 투자할 경우 상기 세제우대 기간 만료후 다시 3년간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가 징수됨. 또 중국 정부가 규정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가가 지정한 서부지역 및 기타 지역의 『국가투자장려항목』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2001년부터 2010년간 15%의 감면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교통, 전력, 수리(水利), 우편, 방송부문의 신설 기업들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익이 발생하는 해를 기준으로 첫 해와 그 다음해에는 소득세가 면세되고, 제3년째 부터 제5년째 까지 소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됨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다시 해당 기업에 투자해 등록자본을 증가 또는 자본투자 방식으로 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경영기한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으면 재투자한 부분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음. 재투자 후 5년이 채 경과되지 않고 철수하는 경우 이미 환급 받은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함.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내에 직접 재투자를 통해 수출기업 또는 첨단기술 기업을 설립 확대하고, 경영기한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재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함. 그러나, 기업이 생산 및 경영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나도록 수출기업의 표준에 미달하거나 계속 첨단기술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이미 환급 받은 세금의 60%를 다시 납부해야 함
- 외국인투자로 설립된 수출형 기업이 법정 면세 및 감면 기한 만료 후, 당해연도 수출 제품의 생산가치가 전체 생산된 제품 생산가치의 70% 이상일 경우, 당해연도에는 세법에 따라 규정된 세액을 절반으로 감면함. 단, 경제특구나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기업과 기타 15%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중 위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한 첨단기술기업이 법정 면세 및 감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첨단기술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이후 3년 동안 법정세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이미 15% 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는 10% 세율 적용 등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목임
- 개인소득세는 중국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징수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징수된 세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귀속됨. 2001년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총 716억 1백만 위안으로 당해연도 중국 전체 세수의 4.7%를 차지함
-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분류됨

- 중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더라도 중국내의 체류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은 중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함. 중국내에 주소지가 없고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은 중국의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으면 중국내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불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단,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6년째 되는 해부터 중국 국외에서 획득한 전체 소득에 대해 납세해야 함
- 중국 국내에 주소지가 없고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가 부과함.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고 동일한 납세연도 (1월1일~12월31일) 중 중국 국내 연속 또는 누적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중 국외의 고용주가 지불하고 해당 고용주의 국내 기구 또는 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음.

상술한 중국 국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란, 동일 납세연도 중 중국내에서 365일을 거주했음을 의미하며, 이 기간중 1회 30일 또는 누적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출국일수는 거주기간에서 공제하지 않음. 즉, 납세연도 기간내 중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 과세대상

- 개인소득세의 과세 항목은 급여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기업 및 사업단위의 도급 및 임차 경영소득, 노무 보수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허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자산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우연 발생소득 및 국무원 재정부문이 정한 기타 소득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됨
- 현재 급여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중국 개인소득세 세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감·면세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국무원의 각 부문,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軍) 이상의 단위 및 외국 조직, 국제조직이 수

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의 장려금

- 중국 재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및 국무원이 발행, 비준하는 금융채권의 이자, 교육저축 예금(개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규정된 금액을 예치해 교육 목적에 전용하는 예금)의 이자 및 국가 재정부서가确定的 기타 전용예금 또는 저축성 전용기금(현재 주택 적립금, 기본 의료보험비, 기본 양로보험비 및 실업보험기금 등 4개 항목이 있음)에 대한 예금이자
- 국무원이 제정해 집행하는 정부 특수보조 및 국무원이 면세로 규정한 보조금
- 복리비(국가규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적립한 복리비 또는 노조경비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구호 보조금), 구제비용(민정부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보험 배상금
- 중국의 관련 법규에 의거해 면세로 규정된 주중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외교 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직원의 소득
- 중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공약 및 조약에 면세로 규정된 소득
- 회사나 개인이 국가 규정 또는 지방 정부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 비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본 양로보험비, 기본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및 주택적립금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기 임금 수령시 수령 임금이 합산되어 과세됨. 개인이 규정에 따라 상기 금액을 수령할 경우 개인 소득세가 면제됨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잠정 면제됨

- 주식 투자기금의 양도 소득
-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성과, 주식 및 비례 출자 등 주식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 개인이 5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해 취득한 소득
- 개인이 각종 위법 행위 및 범죄 행위를 신고해 획득한 보상금
- 개인이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 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속비
- 퇴직연령 이후 연장 근무에 따라 취득하는 급여·임금 소득
-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 국적의 전문가
 - 세계은행 대출협약에 의거, 세계은행이 중국에 파견한 직원
 - 유엔이 중국에 파견한 직원
 - 무상 원조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파견된 직원
 - 중국에서 근무하고 급여는 외국에서 지불하는 전문가

□ 자원세

- 자원세는 국유의 자연 자원 보호 및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 각 자원별 세수의 효과적인 조절을 위해 중국이 지정한 자연 자원에 대해 징수되는 세목임
- 자원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 광물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

식회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단위, 개인사업자 및 개인임

- 현행 중국의 자원세는 주로 석유, 철광석 및 석탄 등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및 주식회사에 대해 징수하고 있음

- 과세대상 및 세율

- 자원세는 생산 품목별로 종량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며 실제 등급폭 및 세액표준은 아래와 같음

자원세 세액 산출 기준

과세 품목	세액범위
원 유	8~30위안 / 톤
천연가스	2~15위안 / 1000m ³
석 탄	0.3~5위안 / 톤
기타 비금속 광물	0.5~20위안 / 톤 또는 m ³
흑색금속 광물	2~30위안 / 톤
유색금속 광물	0.4~30위안 / 톤
소금	
- 고체소금	10~60위안 / 톤,
- 액상소금	2~10위안 / 톤

- 세액 계산 방법

- 자원세는 과세대상 품목의 과세 수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 과세수량에 표준세액을 적용시킨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납부세액=과세대상 품목의 과세수량×적용세율 표준

○ 감 · 면세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세 징수를 면제 또는 감면함

- 원유 채취 과정에서 가열,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자원세가 징수되지 않음
- 납세자가 과세대상 품목을 채취하는 도중 자연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 또는 직할시)인민정부가 직권으로 자원세에 대해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줄 수 있음
- 독립된 야금광산이 생산하는 과세대상 철광석에 대해서는 자원세를 60% 감면 징수함. 유색금속 광산에 대해서는 자원세를 30% 감면 징수함.
-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자원세가 감면 및 면세됨

□ 도시부동산세

- 도시부동산세는 도시지역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
- 도시부동산세는 지방세무국이 징수관리를 책임지며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됨

- 현행 도시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홍콩·마카오·대만인과 화교가 투자해 설립한 기업,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 동포 및 화교 개인임
- 중국 국내의 부동산만 과세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과세 지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세액 계산 방법
 - 과세 기준
 -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
 - 부동산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과세
 - 세율
 -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1.2%의 세율 적용
 -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18%의 세율 적용

【납부세액 계산 공식】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감·면세
 - 신축건물은 완공한 달로부터 3년 간 도시부동산세가 면제됨
 - 수리 보수한 건물의 비용이 신축 비용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준공한 달로부터 2년 간 도시 부동산세가 면제됨
 - * 상기 두 조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인 및 화교가 비영리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잠정적으로 도시부동산세가 면제됨

□ 토지증치세

- 토지증치세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범화하며 토지 거래 수익의 효과적인 조절을 위해 양도되는 토지의 부가가치액에 대해 징수되는 세목임
-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국유 토지사용권, 지상건축물(지상, 지하의 각종 부착물 포함)과 그 부착물을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상 양도해 수입을 취득한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회사, 기타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단위, 개인 사업자 및 기타 개인 등임

○ 세액 계산 방법

- 과세 표준

-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으로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양도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함
- 양도차익(增值額)은 납세인이 부동산 양도시 취득한 수입에서 규정된 공제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 납세자가 취득한 수입이란 부동산 양도시 취득한 대금 모두와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며 형식상 화폐수입, 실물 수입 및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함

- 세율

토지증치세는 4등급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함

- 양도차익이 공제항목 금액의 50% 이하인 경우 30% 세율 적용

- 양도차익이 공제항목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인 부분은 40% 세율 적용
- 양도차익이 공제항목 금액의 100% 이상, 200% 이하인 부분은 50% 세율 적용
- 양도차익이 공제항목 금액의 200% 이상인 부분은 60%의 세율 적용

【납부세액 계산 공식】

$$\text{납부세액} = \sum(\text{양도차익} \times \text{적용세율})$$

○ 감 · 면세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현지 관할 세무기관의 기준을 받으면 토지증치세 징수가 면제됨

- 보통 표준 주택(현지의 일반 민용주택 표준에 따라 건설해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 증가분이 각항 공제항목 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 도시계획 실시에 따라 국가가 필요에 의해 법에 따라 징발, 회수한 부동산
- 도시계획 실시에 따라 국가가 필요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이전이 필요해 납세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개인이 직장을 옮기거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쳐 거주기간이 만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토지증치세 납부를 면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증치세 징수가 잠정 면제됨

- 부동산을 합자기업의 현물출자분으로 투자하거나 합자기업 파트너에게 양도할 경우
- 일방이 토지를 출자하고 나머지 일방이 자금을 출자해 건설한 주택을 완공후 합작 비율에 따라 각각 사용할 경우
- 기업 합병시 피합병 기업이 자신의 부동산을 합병한 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자신이 보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차량구입세

- 차량구입세는 중국에서 차량을 구입시 과세되는 세목임
- 차량구입세는 국가세무국이 징수관리를 책임지며 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전적으로 교통사업 부문에 사용됨
- 차량구입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과세대상 차량을 구입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회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 단위, 개인사업자 및 기타 개인임
- 차량구입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동력차량, 트레일러, 농업용 운송차 등임. 차량구입세 과세대상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해 공포함

○ 세액 산출 방법

- 차량구입세는 규정된 과세대상 차량의 과세가격에 적용세율을 곱해 산출함
- 차량구입세의 세율은 10%임. 차량구입세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해 공포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text{납부세액} = \text{과세 가격} \times \text{적용세율}$

○ 감·면세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구입세가 면제됨

- 주중 외국대사관 및 외교대표, 주중 외국영사관 및 영사관원, 국제기구의 주중 대표기구 및 그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차량
- 고정 장비를 장착한 비운수용 차량(굴착기, 롤러, 지게차, 적재차량, 기중기 등)
- 홍수 감시용 전용차량 및 삼림 소방용 전용차량

□ 차량·선박사용 면허세

- 차량·선박사용 면허세는 규정된 차량 및 선박에 대해 징수되는 세목임

- 차량·선박사용 면허세는 지방 세무국이 징수관리를 책임지며 수입은 지방정부로 귀속됨
- 현행 차량·선박 사용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홍콩·대만·마카오인과 화교가 투자해 설립한 기업 및 외국인, 홍콩·대만·마카오인 등
- 납부세액 계산 방법
 - 차량·선박사용 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차량에 대한 사용 면허세 과세표준과 선박에 대한 사용 면허세 과세표준 등 2 종류로 분류
 - 차량사용 면허세는 과세대상 차량의 수량 또는 순톤수에 따라 산출하고, 선박사용 면허세는 과세대상 선박의 순톤수 또는 적재 톤수에 따라 산출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대상 차량의 수량(또는 순 톤수)} \times \text{적용세액 표준} \\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대상 선박의 순 톤수(또는 적재 톤수)} \times \text{적용세액표준} \end{aligned}$
--

- 면세
 - 각국의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용차량과 외교대표, 영사관원,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행정기술직원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차량 또한 국제기구의 주중대표기구 및 그 관원이 사용하는 차량은 일정한 '차량사용 면허세'의 면세 혜택을 받음

- 이 외에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소방차, 살수차, 쓰레기수거차량, 구급차 등의 차량도 차량·선박사용 면허세가 면제됨

□ 선박톤세

- 중국의 선박톤세는 규정된 선박에 대해 징수되는 세목임
- 선박톤세는 세관총서가 그 징수 관리를 책임지며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됨
- 선박톤세의 납세자는 아래 열거된 선박의 사용자 또는 선박을 위탁한 외국 선박대리회사임
 - 중국 항구를 통행하는 외국선적 선박
 - 외국 기업이 임대해 사용하는 중국 선적 선박
 - 중외합자기업이 사용하는 중국 또는 외국 선적의 선박
 - 중국이 임대해 사용하는 국외를 운항하거나 국내 연해 무역을 겸업하는 외국 선적의 선박
- 세액 계산 방법
 - 선박톤세는 종량제에 따라 산출하며 과세대상 선박의 종류, 순톤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세액 표준을 정함
 - 과세대상 선박의 선적국과 중국이 상호 선박 조세 최혜국 대우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우대 세액표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일반 세액표준을 적용함

-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사용하는 선박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해 사용하는 중국선박은 모두 우대 세율표준을 적용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대상 선박의 순 톤수} \times \text{적용세액 표준}$
--

○ 면세

-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거나 중국이 외교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이 사용하는 선박
- 중국 항구에 피난, 수리 정박 또는 선박용 연료나 기타 물자를 보충하는 등 화물 및 여객의 적재 및 하역하지 않는 선박

□ 인지세

- 인지세는 경제활동중 작성, 발급되는 증명서들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세목임
-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법에 규정된 경제활동 관련 증명서를 작성, 수령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회사,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및 개인경영자와 기타 개인임
- 납부대상 증명서

- 매매, 가공하청, 건설공정도급, 재산임대, 화물운수, 창고보관, 차용, 재산보험, 기술계약 및 기타 계약성 증명서
 - 소유권 이전 증명서
 - 영업장부
 - 권리, 허가증서
 - 재정부가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기타 증서
- 각 과세대상 증서의 성질에 따라 인지세는 각각 비례세율 또는 정액세율을 적용함
 - 인지세는 과세대상 증서에 기재된 금액, 비용, 수입액 또는 증서 매수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규정된 적용세율 또는 세액 표준에 따라 납부세액을 산출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대상 증서에 기재된 금액(또는 비용이나 수입액)} \times \text{적용세율}$$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대상 증서의 수량} \times \text{적용 표준세액}$$

○ 면세

아래에 해당되는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증서의 부분(副本) 또는 복사본. 단,正本(正本)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정부, 복지시설 및 학교가 설립한 서고에 기증한 경우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 및 국가금융기관에 우대 차관을 제공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 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취득세(契稅)는 토지 및 주택의 권리이전이 발생한 경우에 그 권리를 이전 받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세금임
- 지방 재정, 세무기관이 징수관리를 책임지며 그 수입은 지방 정부로 귀속됨
-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회사,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및 개인경영자와 기타 개인이 포함됨
- 세율
 - 부동산 취득세(契稅)는 3~5%의 범위내에서 비례세율을 적용함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각 지역의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정을 고려해 상기 범위 내에서 적용 세율을 결정하고 이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 문서화함
 - 현재 톈진(天津), 네이멍구(內蒙古),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푸젠(福建), 산둥(山東), 광둥(廣東), 광시(廣西), 하이난(海南), 충칭(重慶), 윈난(云南), 구이저우(貴州), 산시(陝西), 칭하이(青海), 닝샤(寧河), 신장(新疆) 등 16개 성, 자치구, 직할시가 모두 3%의 세율을 적용
 -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쓰촨(四川) 등 10개 성, 직할시가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외에 간수(甘肅)성은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랴오닝(遼寧)성은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헤이룽장(黑龍江) 및 지린(吉林) 등 2개성은 주민이 구입하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시장(西藏)자치구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음

○ 납부세액 계산 방식

- 국유토지 사용권 매각, 토지사용권 양도 및 주택매매시 거래성사가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제반 권리이전 계약에 명시된 가격, 인수자가 지불해야 할 화폐, 실물, 무형자산 및 기타 경제이익을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과세
- 국가에서 토지를 불하받는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비준받아 양도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양도자가 부동산 취득세를 재납부해야 함

【납부세액 계산 공식】

$\text{납부세액} = \text{과세근거} \times \text{적용세율}$
--

○ 감 · 면세

-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단위가 토지 및 건물을 불하받아 사무, 교육, 의료, 과학연구 및 군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일반 주택은 잠정적으로 부동산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 징수

- 중국의 관련 법률과 중국이 조인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취해야 할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유엔주재기관,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승계한 경우,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 부동산 취득세(契稅)징수가 면제

주권반환 3주년

마카오를 다시 본다

- 2005 東亞경기대회, 환경시장 등 수요 늘 듯 -
- 광둥성 주강삼각주 진출 전초기지 삼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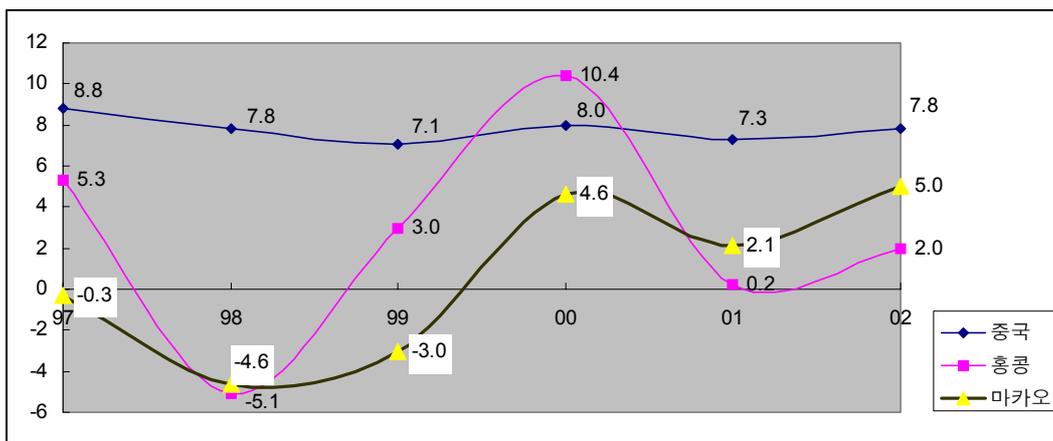
KOTRA 해외조사팀 박한진 과장

1. 마카오의 변화

□ 마이너스 성장 탈출

-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성장이 주권반환('99년 12월 20일) 이후 회복돼 2000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
-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는 중국이 7~8%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마카오는 홍콩과 유사한 성장률 곡선을 그리고 있음

중국, 홍콩, 마카오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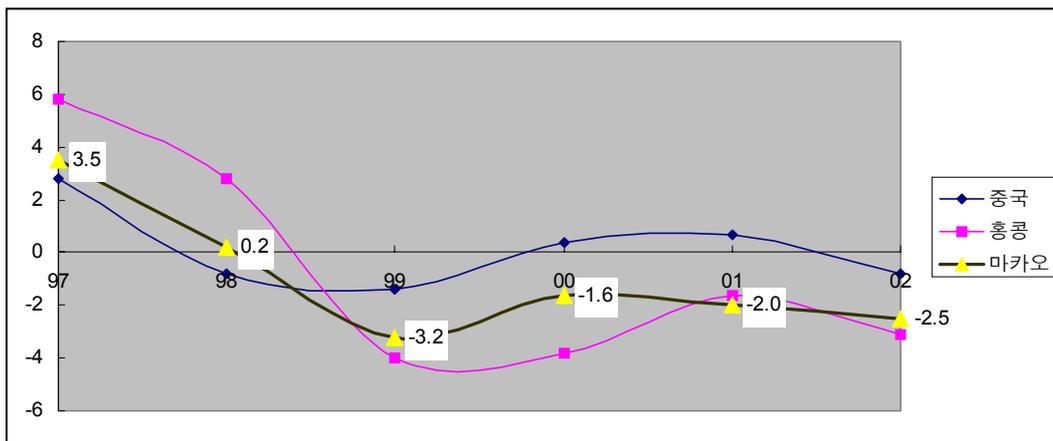


주 : 2002년은 전망치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홍콩통계처(www.info.gov.hk/censtatd), 마카오통계조사국(www.dsec.gov.mo)

- 다만, 급격한 등락폭을 보이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주권반환 이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실업률도 6.4%를 기록하고 있음
 - 홍콩과 중국의 실업률은 각각 7.2%(‘02년 10월)와 3.9%(‘02년 9월) 수준임
 - 단, 중국은 도시지역 등록실업률로써 실제 실업률은 홍콩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물가상승률(Composite CPI)은 ‘99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 디플레이션 구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고 보다 심화될 조짐도 보임
 - 중국과 홍콩의 물가상승률 변동 곡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이로 볼 때, 중국-홍콩-마카오 경제는 동일 흐름에 있음

중국, 홍콩, 마카오의 물가상승률 추이



주 : 2002년은 중국, 홍콩(1~10월), 마카오(Q1~Q3)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홍콩통계처(www.info.gov.hk/censtatd), 마카오통계조사국(www.dsec.gov.mo)

□ '1국 2체제' 진전

- 주권반환을 전후해 심리적 혼란을 겪었던 홍콩과는 달리 마카오에서의 '1국 2체제' 운용은 거부감 없이 조용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은 홍콩반환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 정부와 대립했으나 포르투갈은 1966년 123사태 이후 사실상 마카오에서 손을 놓기 시작함 1)
 - 이에 따라, 홍콩반환 전에 많은 홍콩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카오는 주권반환 이전부터 '中國化'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며 언론 보도 역시 홍콩보다 친중 성향이 강함 2)
- 중국 정부가 약속한 '1국 2체제' 운용의 대원칙인 '高度自治, 澳人治澳'(고도의 자치권,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통치)는 원만하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마카오 반환이후 혼란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97년 홍콩 반환의 전례가 있었던 데 크게 기인함
- 지난 12월 13일에는 마카오에서 중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중국 국기.국휘.국가 전시회(中華人民共和國國旗,國徽,國歌展)가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함
 - 이 전시회에는 에드먼드 호(何厚鏞) 행정장관을 비롯한 마카오 정부 고위관계자와 중국 외교부 마카오특파원, 마카오주재 인민해방군 책임자 등이 참석함

1) 123사태 : 중국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발생한 마카오 좌익세력의 폭동
2) 홍콩과는 달리 마카오 매체들은 중국을 지칭할 때 祖國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음. 또, 중국 정부가 홍콩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반해 마카오 언론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반응이 없음

□ 치안상황 개선

- 주권반환 당시 최대 난제로 지적됐던 치안불안 문제가 지난 3년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카오는 카지노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구조상 3) 이권쟁탈을 둘러싼 조직세력간의 충돌 가능성이 큼
- '99년 9,262건을 기록했던 등록 범죄건수(criminal infractions registered)가 8,925건('00년)→8,905건('01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마카오 경찰은 조직세력의 강력 범죄에 대해 홍콩 경찰은 물론, 광둥성 주요 지역의 공안과도 수사 공조체제를 유지해 범죄율 감소효과를 거둬
 - 치안문제는 마카오와 중앙정부의 개선의지가 확고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마카오의 치안불안은 종래 외국인투자자의 주요 기피요인이었기 때문에 향후 범죄율이 지속 감소할 경우, 외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카오 범죄발생 건수

연 도	1999	2000	2001
등록 범죄(건)	9,262	8,925	8,905

자료원 : 마카오통계조사국(www.dsec.gov.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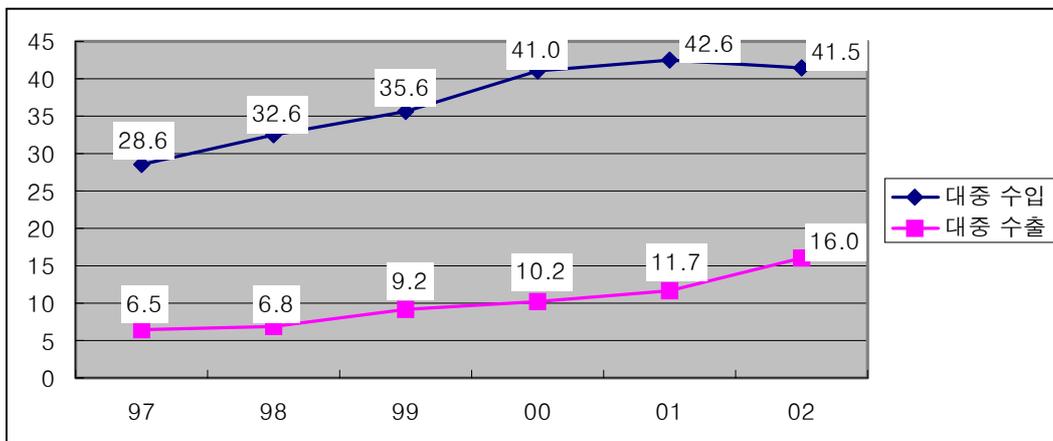
3) 마카오 카지노업계의 대부 스텐리 호가 운영하는 마카오여행오락유한공사(STDM; 澳門旅遊娛樂有限公司)는 지난 2001년까지 카지노사업 독점권을 유지하며 매년 정부 세수의 60% 이상을 납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음. 마카오 정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마카오인 3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스텐리 호와 연계해 생계를 이어감

□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

- 총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21.9%에서 3년만에 29.3%('02년 1~9월)로 급상승함
- 총 수입에서 대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99년)에서 '01년 이후 약 42% 수준으로 상승함
- 총 수출내 대중국 수출비중도 9.2%('99년)에서 16.0%('02년 1~9월)로 급상승 추세임
- 특히, 광둥성과의 무역교류가 급속히 확대돼 '02년 1~11월중 대광둥성 수입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6%(US\$ 6.72억)와 31.8%(US\$ 1.24억 달러) 증가함

마카오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단위 : %)



주 : 2002년은 Q1~Q3 실적 기준

자료원 : 마카오통계조사국(www.dsec.gov.mo)

- 2001년부터는 중국-마카오 비즈니스위원회(內地與澳門特區商貿聯繫委員會)를 가동, 연 1회(7월) 중국과 마카오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이 회의는 투자 및 무역, 이중과세 방지, 지적권, 상품검사 등 경제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마카오세계무역센터(www.wtc-macau.com)는 중국국제상회(CCOIC; 상공회의소 격)와 공동으로 상사분쟁조정센터를 설치, 12월부터 활동을 개시함

□ 기업진출 확대 움직임

- 중국과의 경제일체화 진전 및 마카오 경제의 회복세 진입으로 마카오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베이징 티엔커룽(北京天客隆) 수퍼는 중국계 대형 수퍼마켓으로는 최초로 '02년 6월 마카오에 진출함
 - 포르투갈계 IC 설계회사인 Chipidea Microelectronics가 '02년 7월 설립됨
 - Starbucks Coffee Asia Pacific Ltd.와 홍콩의 메이썸 그룹(美心集團)이 8월 합자, 설립한 스타벅스(星巴克) 커피 마카점은 앞으로 1년내 매장 10개 증설 계획

□ 소규모 경제체제의 한계성은 여전

- 마카오는 자체 추진력이 부족한 소규모 경제체제인데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숙기간을 겪지 않고 곧바로 카지노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이행함
 - 과거 지배국인 포르투갈도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외부 충격요인에 따라 성장의 기복이 결정되는 냄비(pot) 같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주권반환 이후의 플러스 성장국면도 안정적(stable)이라기 보다는 불안한 측면이 있음
- 중국과의 경제일체화가 진전되면서 특히, 광둥성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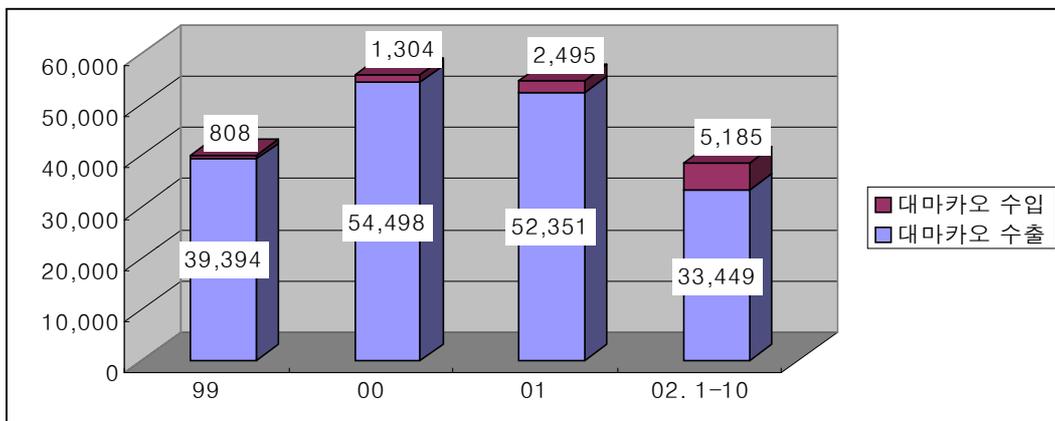
2. 한-마카오 경제교류 동향

□ 교역규모 감소세

- 한-마카오 교역은 '99년 US\$ 4,020만에서 '00년 5,580만으로 38% 이상 증가했으나 이후 대마카오 수출이 감소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대마카오 수입은 금액은 미미하나 최근 3년간 연평균 9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류,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를 넘어서고 있음
 - 석유류,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의 대마카오 수출 감소는 종래 마카오를 경유한 대중국 재수출 수요의 상당 물량이 직수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류, 화공제품, 전자전기제품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9%에 달함

대마카오 수출입 동향

(단위 : US\$ 천)



자료원 : KOTIS(www.kotis.net)

□ 잔존투자는 단 1건

- 대마카오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6건, US\$ 200만 3천, 투자기준으로 3건, US\$ 97만 6천으로 미미함
 - 이 가운데 2건이 청산되고 실제 잔존투자는 1건, US\$ 50만 (운수창고업)에 불과함
- 이는 마카오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 주하이(珠海)에 우리나라 11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과 대조를 보임
 - 우리 기업에 있어 마카오의 투자흡인 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함

한국의 대마카오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총 신고		총 투자		청산 등		순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2,003	3	976	2	476	1	500

자료원 :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인적교류 증가세

- 홍콩 방문객 중 상당수가 마카오 방문객이며 최근 홍콩방문 한국인 수가 '99년 172,904명에서 206,708명('00년)→239,378명('01년)→236,058명('02년 1~11월)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마카오 방문객 수도 증가 추세임
 - 마카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마카오 입국은 '00년 45,620명에서 '01년 47,098명으로 증가함
 - 한-마카오 간 무사증 체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인적교류가 확대될 전망임

3. 활용 방향

□ 관광상품시장 진출

- 마카오는 연간 관광객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서 이들을 겨냥한 관광상품시장 전망이 양호함
 - 마카오 통계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관광객의 마카오 체류기간은 평균 1.3일이며 한 사람이 1,400파타카(Pataca; US\$ 174) 상당을 소비하고 있어 고가·고급품보다는 실용적인 아이디어형 선물용품이 유망함
 - 마카오-주하이 접경의 면세점 진출도 모색할 수 있음
- 홍콩의 배후도시인 선전(深圳)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마카오-주하이 지역 면세점도 홍콩내 법인(buying office)을 통한 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홍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동아시아경기대회 특수

- 마카오는 오는 2005년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서 향후 스포츠용품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 지난 10월 방한한 에드먼드 호 마카오 행정장관은 대한체육회 등을 방문,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음
 - 한국은 대형 국제스포츠행사 개최경험이 풍부해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시장진출을 병행해야 함
-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east-asia-games2005.com)를 통해 습득 가능함

□ 환경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 마카오는 최근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마카오정책연구소(澳門政策研究所; www.macaupolicy.org) 주도로 「마카오환경 상황 Task Force」를 구성함
 - Task Force는 2003년 초까지 환경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후, 각종 환경프로젝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2005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차원의 환경사업도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정부발주 공사 진출 가능성 타진

- 현재 홍콩-주하이-마카오를 연결하는 대교 건설안이 논의단계에 있음
 - 대교건설 타당성을 두고 아직은 논란이 있으나 향후 사업시행이 확정될 경우,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음 4)

□ 전자정부시장 진출

- 마카오는 12월부터 전자신분증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2003년부터 정부 전자구매 및 전자인증시스템 등 전자정부 구축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관련 시장 전망이 밝음

4) 홍콩과 마카오가 사업시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 반면, 광둥성 정부는 세 지역을 연결하는 대교가 광둥성 일부 지역에 침수(浸水)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음. 이는 대교가 통과하는 지역의 약 70% 이상이 광둥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과 마카오가 연계 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음.

□ 주장삼각주 서부지역 진출거점 활용

- 홍콩과 선전이 광둥성 주장삼각주의 동부 중심축이라면 주하이
이를 끼고 있는 마카오는 주장삼각주의 서부 축에 해당함
 - 마카오 자체 시장은 물론, 마카오-주하이의 연결고리에 중심
을 두고 주장삼각주 서부지역 진출거점으로 활용해야 함

- 마카오기업은 광둥성 진출이 활발해 이들과의 중국시장 공동
진출도 적극 모색해야 함
 - 마카오 기업관련 정보 인터넷 사이트
 - 마카오中華總商會(www.acm.macauweb.com)
 - 澳門廠商聯合會(Industrial Association of Macau; www.madeinmacau.net, info@madeinmacau.net)
 - 마카오貿易投資促進局(www.ipim.gov.mo)
 - 마카오 옐로우 페이지(澳門黃; www.yip.com.mo)
 - 마카오 경제정보 인터넷 사이트
 - 마카오 정부(www.macau.gov.mo)
 - 마카오 통계조사국(www.dsec.gov.mo)
 - 마카오일보(www.macaodaily.com)
 - 마카오대학(www.umac.mo)
 - 마카오정책연구소(www.macaupolicy.org)

[참고]

마카오 주요 경제지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구(천명)	419.4	425.2	429.6	431.5	436.7	-
GDP(US\$ 백만)	7,007.3	6,504.6	6,133.0	6,197.4	6,198.7	-
GDP/人(US\$)	16,708	15,298	14,276	14,362	14,194	-
경제성장률(%)	-0.3	-4.6	-3.0	4.6	2.1	5.0(P)
물가상승률(%)	3.5	0.2	-3.2	-1.6	-2.0	-2.5
실업률(%)	3.2	4.6	6.3	6.8	6.4	6.4
총교역(US\$ 백만)	4,229.2	4,095.7	4,239.2	4,794.1	4,685.5	4,024.3
수 출(US\$ 백만)	2,147.6	2,141.1	2,199.7	2,539.2	2,299.4	1,936.2
수 입(US\$ 백만)	2,081.6	1,954.6	2,039.5	2,254.9	2,386.1	2,088.1
수 지(US\$ 백만)	66.0	186.5	160.2	284.3	-86.7	-151.9
관광객(천명)	7,000.4	6,948.5	7,443.9	9,162.2	10,279.0	8,490.1
평균환율(MOP/US\$)	7.976	7.979	7.992	8.026	8.034	8.034

주 : 2002년 수치는 경제성장률(연간 전망), 물가상승률.관광객.평균환율(Q1-Q3), 실업률(Q3), 교역(1~10월) 기준

자료원 : 마카오통계조사국(www.dsec.gov.mo)

전문가 논단

中 WTO 가입 1년, Amcham 평가보고서

KOTRA 베이징 무역관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는 美 무역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2001년 하반기 중국 WTO 집행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WTO가입 후 이행상황을 파악해 자국기업의 대중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WTO 집행작업반은 중국의 WTO 관련 의무이행 및 조치실시 파악, 미국과 중국정부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 건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 감시반은 농업 도소매업 IT기술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운수 등 업종별 하위부서를 두고 각각 산업별로 이행상황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불과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WTO 양허 스케줄을 근거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많은 인구나 넓은 국토를 보유한 전환기의 국가로 단기간 내에 모든 상황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 실시되는 가시적인 성과로 중국정부의 전산업 영업허가 관리규칙 발표 및 일부 대외개방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법규 수정, 2002년 자동차 관세인하,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보험업 영업허가 신청 과정 제정 준비 및 종업원과 업종 관리 전문화, 현대화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투명도가 낮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WTO 집행작업반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 정리한 것으로 미국정부 및 산업계의 입장을 토대로 작성돼 우리의 입장과는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의 WTO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농업분야

□ 요약

WTO가입 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체 및 대중 투자업체는 여전히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재기관의 중복 및 문제 처리상 상호 불협조 등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 현안사항

가.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제한

최근 몇년간 중국의 콩제품 대미 수입액은 연간 1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GMO 농산물 관련 문제는 중국의 WTO가입 전에 이미 양국간 통상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6월, 중국은 규정에 따른 실시세칙을 명확히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GMO(유전자변형) 곡물 및 식물성 기름 관련 작물에 대해 안전인증 관련 새로운 법률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 콩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다소 모호한 내용의 과도적인 규정을 내놓고 있다. 즉, 미국산 콩(大豆)의 대중 수입이 허용되나건 별로 검사수속을 거쳐야 한다. 검사과정은 2002년 12월 20일로 종결될 예정이다. 현재 검사기일이 지체되면서 수입업체는 화물 적체 및 관련 체납금 등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12월 20일 이전 규정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중국 농업부는 중국 내 생물의 다양성 현장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은 기술관련 업체의 실험종자 수입허가증 발급기일을 지연시켰다.

최근 중국 위생부(Ministry of Public Health)가 발표한 <생물기술식품 안전 및 표기 조례>는 미국 가공식품의 대중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중국은 규정에 따라 WTO에 이들 신규정을 통보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도의견 및 요구도 제출하지 않았다. 신규 조례에 따르면 화물 운송업체는 위생부, 중국 품질검사국, 국가 검역국에 등록해야 하며, 결국 농업부의 규정에 한층 더 복잡한 행정절차가 부과됐다. 이들 규정은 당초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이었으나 현재 연말까지 집행이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내 유전자변형 농산품 관리기관이 아직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안전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미국산 옥수수의 대중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농산물 관세 할당(tariff rate quotas : TRQs)

중국은 옥수수, 소맥, 콩을 비롯한 특수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 할당(TRQs)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쿼터량은 당초 2002년 1월 발급하고 일부 쿼터량을 비국유업체에 분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002년 4월에야 발급되었다. 또, 다수 지방정부 소속업체가 비국유무역공사 명의로 쿼터량을 취득했으며 합법적인 자격을 보유한 비국유무역회사에 대한 쿼터량은 극히 작아 경제적인 효과가 축소되고 있다. 현재 쿼터배분 제도상, 국유무역회사에 대한 쿼터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면화의 경우 수입 쿼터량 확정 및 배분이 가장 불분명한 상품 중 하나로 분배 및 쿼터획득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비국유무역업체에 배분되는 쿼터량은 가공 및 재수출에 근거하여 조정해야 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局)이 특히 수입산 면화의 재수출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중국업체들은 면화수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저렴한 면방직품을 전통적인 미국의 면화 수입업체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면화수출입 체제는 미국면화의 기타국가에 대한 매출량을 감소시키고 있

다. 최근 중국은 또 수입산 면화에 대해 섬유단사의 함유량 테스트 및 잡질 면섬유의 '棉結' 테스트 등 2개의 신규 검사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미국은 아직 이런 테스트 관련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화물이 중국항 도착 후 반송될 가능성이 있어 면화 수출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99년 중미간 농업협력합의가 있었지만 소맥의 수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쿼터량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비국유무역업체에 배분되어야 할 84,700톤의 소맥 쿼터량이 가공업체에 발급됐으며 법률에 따라 가공업체는 당사의 제품을 재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 맥분 또는 기타 제품의 정제가공 쿼터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가 발전계획위원회는 25만톤의 쿼터량(비국유무역업체 총 쿼터량의 29.5%에 상당함)을 가공무역업체에 발급했다.

다. 수출보조금

중국은 WTO가입 시점에서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제2위 옥수수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중국정부의 옥수수 수출량 1톤당 30~40달러의 수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WTO 가입에 따라 수출보조금에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2001년말 옥수수 수출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판매액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톤당 25달러 낮은 수출가격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13일, 미국 우유제품협회 '2002년도 식물성 기름 종자 및 제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대두분(大豆粉)의 수출은 13%의 증치세 환급을 적용받는다' 내용의 통지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정보원에 따르면, 13%의 증치세 환급이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년 상반기 대두분(大豆粉)의 수출량은 작년의 5만 천톤에서 59만 6천톤으로 대폭 증가

했다. 단, 한가지 불명확한 것은 13%의 증치세 환급이 모든 콩가루 제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산 콩가루 제품에만 제한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13%의 증치세 환급이 WTO 규정에 위배되거나 일부 수출보조금(WTO 불허)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 육류 수입검사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은 소, 돼지 및 가금류를 비롯한 육류에 대해 수입허가증 발급을 연기했고 기발급된 허가증도 수입량에 있어서 수입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불공평한 제한조치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금류 수입시 불합리한 식품안전표준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국은 자의적으로 몇개 가공업체를 허가범위에서 제외해 이들 업체의 대중수출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미국의 돼지고기 대중수출에 영향을 끼쳤다. 아직 서면상 구체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정부 담당자는 언급하고 있는 표준에 도달한 중국내 식품가공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마. 외국의 생물기술영역 투자

2002년 4월 1일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농업생물기술 영역 투자 금지규정을 발표했다. 성장과정에 있는 자국 생물기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동 규정이 발표됐으나 외자유치 금지는 오히려 중국 동종영역의 연구발전을 6~9년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업체는 중국 시장에 참여해 인구증가에 따른 작물 개선, 생산량 확대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결 론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약 9개월간 실행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농업관련 수출업체 및 대중진출 업체들은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재기관의 중복 및 처리상 비협조에 따른 불확정요소가 아직 다수 존재하고 있다. 중국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 관련 항구적인 규칙의 지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항구적인 규칙은 12월 20일 반드시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중국은 기타 교역 파트너와 협상을 통해 제도 실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가 교역의 장애 요인인 여러가지 인증과 의무로 연결돼서는 안된다. 현재 중국이 원료 및 가공제품의 규정에 있어 과도기를 거쳐 항구적인 규칙을 제정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며 관세할당 관리 등 각종 처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지체 및 불합리한 제한 등이 사라질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2. 유통업

□ 요약

중국의 유통업은 WTO가입 전 무역장벽 및 시장질서 미확립으로 저효율, 고원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WTO가입 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업체는 해외 생산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했으며 판매망, 도매기지 및 창고의 소유 또는 관리 자격을 보유할 수 없었다. 중국정부가 발급한 상업허가증은 미국회사의 경영, 사후관리, 유지보수, 고객지원 등 경영활동을 제한했고 WTO 협정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

□ 현안사항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미국업체는 중국 내에서 중국산이외의 수입 제품도 판매할 수 있다. 중국은 2003년 외자비중 50% 이하의 중외합자 업체에 수입제품 판매자격을 부여하고, 2004년 50% 이상의 중외합자 업체에, 2005년 외자업체 모두 100%의

판매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화학약품, 비료, 원유 및 정제유 등 민감한 영역의 판매권 관련, 중국정부는 WTO가입 5년 내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택배, 항공우편, 임대, 화물운송, 창고업, 광고, 기술 테스트 및 분석, 포장 서비스 등을 비롯한 유통 관련 서비스업은 향후 3~4년 내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으로 이들 서비스업종 외국회사도 중국내 독자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3년내 직영판매 자격을 승인해야 한다. 즉, 2004년 12월 11일부터 중국정부는 직영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한편, 중국정부는 기타 WTO 회원국과 협상해 각항 의무의 실제적인 실시와 일치하는 조치를 가시화함과 동시에 서비스무역 일반조항에 부합하는 직영판매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했다.

WTO가입 후 중국의 유통업 개방일정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및 예측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업체나 미국업체 모두 중국의 물자시장내 발전이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기전 중국의 지방 유통업체 및 유통 서비스제공 업체들은 남은 몇 년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년간의 시간을 활용해 중국기업은 유통업 경영기반 구축 및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업체는 생산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가 외국계기업의 경영범위 확대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외국계기업은 본국으로부터 일부 쿼터 제한과 관계없는 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동 업체의 중국내 기구의 현지생산 후 시험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 미국업체는 이미 경영범위 확대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허가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2003년은 수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직영판매와 관련해 중국은 WTO가입 후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연합으로 31호 문서를 발표, 독립 유통업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으나 이는 WTO협정과 어긋난다. 모든 국가가 개방 스케줄 추진과정에서 신규 제한을 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이 각국간 합법적인 무역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문서는 또 자본의 기여도 및 경영원가 등에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 결 론

WTO가입 전 이미 존재한 유통업 영역의 무역장벽 및 사회주의 잔재로 저효율, 고원가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WTO양허안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유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도소매업 분야에서 중국은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외국 제조업체는 더욱 개방된 중국시장에서 더욱 용이하게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매업체들은 중국내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으며, 물자관리 및 제품 경영판매 등 유통업 시스템 관리 노하우를 확보한 업체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관련 부대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화물운송업체가 고객을 위한 우수한 체인 서비스를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 개인소비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업체의 홍보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아시아 제2의 광고시장으로 부상했으며 미국의 광고 대리업체는 중국내 고객의 수요충족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직영판매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WTO가입은 더 많은 비즈니스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반드시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동시에 국제관습에 부합하는 법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정보기술

□ 요약

중국의 시장진입 관련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부가 가치 서비스 등 일부 영역의 개방화 및 자유화 관련 모호한 규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IT 및 통신산업의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현안사항

지난해 중국 신식산업부(MII), 외경무부(MOFTEC) 및 신규 설립된 국무원 정보센터(SCIO)등 기관은 중국의 정보기술산업의 구조조정에 주력했다. 이들 기관은 중국내 서비스 운영업체 및 외국업체의 통신시장 진입 관련 법령 초안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이러한 조치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중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향후 강력하고 독립적인 관리기관을 설립, 경쟁을 장려하는 권한부여,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규정 관련 명확한 해석 및 심사비준 절차의 조정, 국가통제 원칙 채택, 기타 정보기술업체 관리 관련 법규 및 정책이 발전하는 IT시장에 또 다른 장애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05년까지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및 기타 IT제품의 관세 철폐를 약속했으며, 컴퓨터 및 컴퓨터 하드웨어장치 조회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 등을 비롯한 관련서비스업의 시장진출과 국가통제 표준을 제정했다.

중국은 이미 기초통신 관련 합의에 따라 통신시장 개방에 동의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동 협의 및 조항은 중국이 상호간의 권리, 독립 감독관리기관 및 기술중립 등을 포함하는 경쟁보장 관리원칙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초통신 서비스에 있어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의 시장 개방 관련 6년의 기한 및 지역별 제한이 있다. 상업적 주재의 경우 WTO 가입 3년후 실시되며 6년후 외국지분 49% 이내의 합자형태로 제한된다. 부가가치 서비스의 경우,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 모두 3년의 기한 및 지역별 개방 스케줄이 있으며, 3년후 외국지분 50% 이내의 합자형태로 제한된다.

부가가치 통신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WTO가입 후 3년간 투자액 및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둔다. 가입 1년에는 외자 비중 30% 및 3개 도시로 제한하며, 가입 2년에는 외자 비중 49% 및 17개 도시로 개방하고 2003년 12월까지 외자비중이 50% 및 전국 모든 지역으로 개방한다.

기술무역장벽(TBT) 협정에서 중국은 일련의 기술표준을 제정할 것을 합의했다. 이중 WTO 가입시 기술규칙 및 기술표준의 통지, 실행상황의 평가절차 등을 공표하는 동시에 다른 WTO회원국 의견을 따를 것을 동의했다. 중국은 기술법규의 발표와 실시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기타 회원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술법규 및 평가절차를 적용하며 모든 기술규칙의 제정 및 실시에 있어 불필요한 국제무역장벽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1년 12월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관세검사 및 심사비준 절차>를 발표했고 이중 2002년 관세율 계획조항 중 251항 정보기술협정(ITA) 관세율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다수가 각종 메모리칩 제조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정보기술제품의 제조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15개 세율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15개 세율항목을 적용하는 업체가 당사의 수입제품에 ITA세율 적용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신식산업부의 비준과 해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002년 1월말 미국 정부관리는 중국의 관세율계획이 ITA협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ITA 적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부 ITA회원국은 2002년 2월 ITA위원회 제노바회의에서 중국의 정보 기술제품 무역의 확대가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통신업 운영허가증 관리규정은 2002년 1월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규정은 주로 중국의 약속을 법률조문으로 명문화시켰으나 이외에도, 기초통신 및 부가가치통신 경영허가시 관련되는 세부 요구 및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신규 규정은 기초 및 부가가치 통신 경영업체의 대중투자 심사비준절차 및 시간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해 외국업체의 중국 통신산업 진출 관련 매우 중요한 첫 단계로 의미를 둘 수 있다. WTO 양허 합의안은 일종의 기초적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신식산업부는 지역제한 조항의 실행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 및 부가가치 통신서비스업체 관리 관련규정 실시에 있어서 신식산업부는 반드시 설비를 토대로 한 서비스 공급업체와 기타 업체간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부 부가가치 서비스업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가령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해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인터넷 구조는 전국범위가 아닌 省 단위로 되어 있다. 향후 외국회사가 省을 넘어 전국적인 운영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IT산업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기 규칙이외에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통신산업 통제(소유)는 WTO 가입 양허안의 실제적인 실행을 위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관리체제 제정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식산업부가 자사출판 통신서비스 리스트에서 IP-VPN(가상 개인 네트워크)을 부가가치 서비스에 포함시킨 반면 중국 운영업체에만 국한시켰다. 이것은 부가가치서비스 면에서 중국이 외국업체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의 부가가치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인식부족은 외국업체의 부가가치서비스 영역에 대한 허가신청의 적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결 론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 관련 여러가지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가가치 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여전히 애매한 법규가 있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서비스 및 기초통신 서비스 영역의 시장진출에 있어 장기적인 과도기, 지역제한, 외국투자 제한 및 설립형태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해 왔다. 기초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허가자격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통신업체는 시장진입 및 설립형태 등 전면적인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지역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완전 독립된 관리기구(구조 및 자금상 기타 통신운영업체 또는 공급업체와 완전하게 독립된 기관)의 설립은 시장참여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정보기술 및 통신서비스 관련 법률 및 처리절차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통신 관련 업체는 기술 규칙 및 표준의 채택, 제출, 실행상황의 평가절차 등(외경 부무 공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 공보 발표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참고해 중국내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4. 지적재산권

□ 요약

중국정부는 정치적 의지 및 법률제도를 바탕으로 불법제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며 변화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중국정부의 민사, 형사, 국제범죄 등 여러방면에 있어서 강력한 제도의 실시의 운행 및 체제구축에 주목할 것이다.

□ 현안사항

'90년대 들어 중국은 미국과 양자협정(주요 협정은 1992년, 1995년, 1996년 체결) 체결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정비에 노력해 왔다. 2001년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중국은 법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근거해 특허, 상표 및 출판권법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2001년 개정된 출판권법은 지난 1990년의 법률을 기초로 WTO 지식재산권 무역 규정 및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 출판권 조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 실시된 소프트웨어 관련 17항 조항은 연구 및 학술용 복제행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WTO 이행 약속을 목적으로 초안했던 39-3 조항은 최종 비준, 실시되지 못했다.

중국은 그동안 불법복제품의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자국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불법복제품 단속 집행에 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부 특정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 등 일부 법률을 수정했으나 법률의 강제집행 및 처벌강도가 미약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미디어, 제품 및 약품상표 등 많은 영역의 도용 및 위조가 범람하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도서분야에 있어 많은 법적집행이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1년 12월 상표법이 수정됐으나 상표국은 지금까지 외국회사가 신청한 유명브랜드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결 론

제도적, 행정적으로 중국이 약속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지켜 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제품의 단속은 정부의 법적 집행 및 처벌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중국정부의 태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5. 서비스업

□ 요약

중국은 보험업 개방에 있어서 투명도, 소유권 및 확장, 경영허가 등 3개 분야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은행 관련 신규 규칙 발표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외국은행에 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은 서비스영역 전체에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으며 중국에 대해 2개의 다자간협상(기초통신 및 금융서비스)를 요구했다. 중국의 WTO 의무는 주요서비스영역의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기진입한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시장진입 권리를 재논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은 보험영역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 뚜렷한 개선을 거뒀다. WTO가입 후 3년내 외국계 보험회사의 지역제한이 점차적으로 철폐되며, 비생명보험회사는 2년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12월, 비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업체(피보험회사 본사가 보험경영허가의 도시범위내에 있는 경우)를 위해 기본 보험서비스이외에 지역제한없이 더욱 큰 규모의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다.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현재 기본 보험서비스 허가 경영범위가 50%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으나 최장 3년후 단체보험 및 양로보험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WTO양허안에 따라 외국계 보험 중개인은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의 각종 경영제한을 철폐하는 것도 WTO 양허안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은 외국은행이 인민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WTO가입후 2년내 현지업체를 대상으로 위안화 업무 가능, 5년내 개인을 대상으로 위안화 업무 가능), 지역범위도 점차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경영허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하나 수

량제한은 철폐한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은행 경영활동의 주요 감독 관리기관으로 WTO 양허안에 따른 금융분야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규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외국계 은행의 업무종류 및 경영범위의 확대에 따라 각종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다.

□ 현안문제

가. 보험업

보험시장 개방에 있어서 투명도, 소유권 및 확장, 경영허가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매우 많다.

① 투명성

전반적으로 보험업의 감독관리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 회원은 경영허가 신고시 연수과정도 거쳐야 한다. 외국계 보험사는 신규 관리규정과 현행 규정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그렇다고 이들에게 해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곳도 없다. 신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도 시간이 짧고, 초안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도 많아 이들의 시장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신규 보험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정부의 간섭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세칙 등 관련 신규 관리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발표방식 및 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신규 규칙의 실시 전 반드시 관련 단체(중국 기업 및 외국계 보험사)에게 충분한 의견발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유권 및 확장

WTO가입 전 발표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보험조례는 자본 및 상환 능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시장진입 허가 및 업무확장 관련 많은 금지사항 및 제한 내역

을 포함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최초의 경영범위를 기타 지방의 시장에 확장하는 경우, 재투자 등에 대해 많은 불투명한 제한을 두고 있다. 자본조건 관련, 외국과 비교해 중국측의 요구가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신규 도시의 경영허가 취득시 보험사가 반드시 자본금을 분리(신규 자회사는 본사와 분리되어야 함)해야 하며 신규 도시에 개설하는 각 자회사는 최저 2천 4백만 달러의 독립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비생명보험사의 업무확장 관련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했다. 즉, 우선 중국내 자회사 설립 3년이 지난 후, 다른 도시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규모의 자회사 등록자본금은 6천만 달러(4개 도시 경영에 제한되며, 이외에 도시별 자회사 증가시 6백만 달러를 추가해야 함)에서 1.8억 달러로 주로 자회사 개설 수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사는 이들 자회사의 개설에 따른 업무확장을 통해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약 2천 4백만달러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지역경영 허가는 동일지역의 기타 3개 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후 1개 자회사 추가 설립시 6백만달러를 추가 투입해야 하며, 최고 6천만 달러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엄격한 자본금 요구는 중국 보험사들이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밖에도 '지역'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③ 경영허가

WTO 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은 신중하게 신규 보험경영자격증(예로 글로벌 자산이 50억 달러, 30년 보험업 경험, 중국내 사무소 2년 이상 등)을 발급할 것이나 수량 제한은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WTO 가입 9개월 동안 중국의 신규 자격증 발급 시스템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외국계 보험사는 여전히 여러가지 복잡한 신청 및 심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히려 신규 규칙으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일이 더욱 크게 지연됐다.

나. 상업은행

중국인민은행이 WTO 규칙에 부합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장행위가 종종 발생해 외국계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신규 은행규칙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외국계 은행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실시해야 한다. 또, 업무 영역의 개방을 통해 외국계 은행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 결 론

미국정부는 2002년 3월, 6월 및 7월에 제네바 WTO 서비스무역회의에서 상기 문제를 제출했다. 유럽위원회, 스위스, 일본, 캐나다 및 미국이 함께 제출했으며 중국의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미국의 보험사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의 신규 보험법규(수정안)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중국이 전면적으로 WTO 약속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 및 정부기관은 이러한 규칙의 제정을 위해 관련 의견 제출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중국의 관련 법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수개월간 중국의 보험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외국계 은행 단체는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관리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감독관리 중점사항은 공개, 투명, 시장지향의 은행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외국계 은행의 경쟁은 시장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계 은행 제한 및 지방은행 보호 목표 등의 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6. 우정(郵政), 자동차

□ 요 약

중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전제로 속달운송 및 화물운송 서비스 의무와 관련해 세부 계획을 제정, '중국의 경영허가증

의 발급절차 및 관련 조건은 시장진출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기타 무역분야의 제한을 더 추가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했다. 한편 소유권 및 운영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 시장진출 기회가 줄어들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며 중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판매 등을 비롯한 직·간접적으로 상업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각 항의 규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중 다수의 규정은 중국내 자동차산업 관련 규정의 중대한 개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수입관세, 쿼터, 수입허가증, 무역권, 금융서비스, 표준 및 인증 규칙,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판매 등이다.

□ 현안문제

가. 우정(郵政) 서비스

중국 우정은 통신산업과 분리된 후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관리로 넘어갔고 2000년 흑자를 기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郵政부문은 서류 및 소포 등의 속달운송 영역의 기존의 시장지분을 회복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WTO 가입에 따른 시장 잠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달운송업체 및 중국주재 대행기관은 외경무부의 감독하에 이미 중국내에서 국제화물 운송업무를 개시했다. 외경부무는 외상투자기업 및 지방기구에 개인우편물을 제외한 국내외 우편속달업무 경영을 허가했다.

WTO가입 후 중국 우정은 2개의 통보를 발표한 동시에 법률수정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 규정에 따르면 중국 우정은 속달운송서비스 영역의 관리권을 행사하며, '개인우편물' 영역의 독점지위를 확대시켰다. 2001년 12월 발표한 629호 통보에 따르면, '우편물'(범위가 극히 광범위하며 서류, 시청각 및 컴퓨터 매체 및 기타자료 등을 포함)의 우편속달업무를 취급하려면, 반드시 중국 우정의 지방 소속기관에 위탁경영 인

가를 신고해야 한다. 중국 우정은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한 후 위탁경영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우정의 서신 속달운송업무는 위탁업무에서 제외됐다.

2002년 2월, 중국 우정은 629호 통보의 64호 문서를 발표했다. 신규 통보에 따르면 중국 우정의 독점 업무범위는 a) 500g 이내의 서신으로 우편비용이 중국 우정의 특별급행 우편 서비스 비용수준보다 낮으며 b) 서신봉투에 자연인의 성명 및 주소가 표기되고 c) 중국정부의 공무용 문서로 까지 확대됐다. 이들 신규 독점 업무량은 현재 국제 속달운송 업체(FedEx, DHL, TNT, UPS) 중국내 업무의 60%에 달한다. 2002년 6월, 중국 우정은 국무원에 신규 우정법(郵政法) 초안을 제출, 위탁경영 원칙이외에 독점수준이 이미 발표한 2개 통보보다 더 확대됐다. 예를 들면, AW B/L 등 문서의 우편운송이외에 500g 이하의 모든 우편운송업무를 중국 우정 업무에 포함시켰다.

① 서비스무역 통용협정 '억제' 금지 규칙

상기 통보는 국제운영업체 및 중국내 합작파트너가 각 성급(省級) 우정기관(그들의 지방 경쟁자는 중국우정임)에 위탁신청시, 실제적으로 WTO 가입전 보다 심사가 더 엄격해졌다. 한편 중국 우정은 독점영역을 개인 우편물에서 기타영역으로까지 확장해 사영업체들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다. 동 통보는 시장진출에 새로운 제한을 가져왔으며, 중국의 서비스무역 통용협정에서 제출했던 억제금지 규칙을 위반했다.

② 중국의 WTO가입 합의

동 통보는 또 중국의 WTO합의 즉 '경영허가증의 발급절차 및 관련 조건은 시장진입의 장애요소로 되지 않으며 필요한 제한이외에 기타 무역분야의 제한을 더 추가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경영'조치가 이미 시장진입 장애요소가 됐으며, 아울러 중국은 추가로 진행되는 신청 시스템의 법규형태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③ 기타 서비스무역 통용협정의 약속 : 시장진입과 내국민대우

동 통보는 또 서비스무역 통용협정의 '시장진입과 내국민대우' 합의를 위반했다. 원인으로서는 a) 경제적 수요에 따른 심사 b) 공급업체 수량 제한 c) 외국업체의 서비스업무 범위 제한 d) 외국업체의 지방 파트너 서비스업무 범위 제한 e) 지방 우정국에 더욱 많은 유리한 조건 제공 등이 꼽힌다. 단순한 절차상 필요성 또는 이익 보장 목적으로 위의 조치의 합리성을 해석할 수 없다.

중국 우정은 위탁경영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WTO에서 중국은 탄저병 전파의 방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조치는 '필요한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제출했다. 그러나 WTO의 안전을 위한 예외적 규칙은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 문제의 경우, 중국은 경제이익이 아닌 안전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무역제한조치 완화와 관련된 어떤 해석도 없었다. 이외에 64호 문서는 가격, 중량, 수화인 등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 이익과 관련이 없는 조항들이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서비스무역 통용협정의 요구에 따라 WTO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안전관련 조치에 대해 아직도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다.

나. 자동차

현재 중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이나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2002년 계획에 따라 자동차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전면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관련부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법률, 규정제도의 초안 내역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다수의 약속이 제때에 진행되지 않아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중국측은 WTO 합의 및 자기책임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투명도, 사전통보 및 합의준수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 결 론

가. 우정 서비스

중국 국무원은 현재 중국 우정, 외경무부, 속달운송업체 및 그 지방 기관 등 이익 관계자들의 제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속달운송업체의 제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EU와 유사한 관리체제를 도입해 비용 및 중량만을 표준으로 영업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우편속달 항목의 가격수준의 한계는 공공 세율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해 최종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중국 우정이 정한 비용기준 또는 국제비용 기준을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종적으로 속달 운송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 우정이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장애요인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무원에 향해 이러한 조치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타당한 법률절차로 상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과 같은 광범위한 우정 전문화 경영은 속달운송 서비스업체의 비즈니스기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불리한 경쟁국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20년간 중국이 실시해온 무역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자동차

중국 자동차산업의 괄목할 만한 고도 성장으로 WTO 약속의 이행여부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WTO 약속 이행이 중국 자동차산업 및 세계시장과의 융합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면적으로 WTO 약속을 이행해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규와 제도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의 주요 내용

- WTO가입 이후 외국의 무역투자 장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경무부)는 2002년 9월 29일 대외무역장벽 조사잠정규칙'을 발표, 2002년 11월 1일부로 시행함

- 담당부처 및 실시부서
 - 외경무부가 외국의 무역투자장벽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외경무부내 수출입공평무역국이 이 규칙의 실시를 담당함

- 조사 신청
 - 조사신청 및 입안결정
 - 피소된 무역장벽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기업 및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신청 가능함
 - 외경무부는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안 또는 기각을 결정하고, 입안결정은 공고하며, 기각시에는 신청자에게 서면 통지함

 - 조사종료
 - 무역장벽조사는 입안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료하며 특수상황 발생시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을 공포하였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무역장벽조사업무를 전개하고 규범화하며 국외무역장벽의 중국의 대외수출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이하 '외경무부'라 함)는 외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외경무부는 수출입공평무역국을 책임부서로 지정하여 본 규칙을 실시한다.

제3조 외국(지역)정부가 시행 혹은 지원하는 관련 조치가 무역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

- (1) 해당 국가(지역)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다자간 무역협정 및 양국간 쌍방무역협정을 위반한 경우
- (2) 중국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해당 국가(지역)의 시장 또는 제3국(지역)의 시장진입 시 불합리한 장애 혹은 제한을 받는 경우
- (3) 중국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해당 국가(지역)의 시장 또는 제3국(지역)의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그 시장경쟁에 있어 불합리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외국(지역)정부가 중국과 공동으로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 또는 쌍방 협정무역협정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

제4조 외경무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立案하여 무역장벽조사를 진행한다.

외경무부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立案하여 무역장벽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신청

제5조 국내기업, 국내산업 혹은 국내기업,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통칭)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외경무부에 무역장벽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국내기업, 국내산업'은 피소된 무역장벽과 관련한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관계의 기업 또는 산업을 말한다.

제6조 무역장벽조사의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신청인 명칭, 주소 및 관련 내용
- (2)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의 조사신청에 대한 설명
- (3)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으로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 내용 및 국내 관련산업의 기본현황 설명
- (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대표하는 국내기업 및 국내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손해에 대한 설명
- (5)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타 내용

제7조 신청서에 다음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한다.

- (1) 조사신청서에 명기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이 실제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 (2) 신청인이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신청인이 이상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면형식으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은 외경무부의 立案 결정 전 조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및 立案

제9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立案 시행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제10조 외경무부는 신청자료의 심사과정 중 신청자에게 규정된 시간 내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만약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본 규칙 제2장의 규정과 부합하고 본 규칙의 제14조 1, 3, 4항 규정의 정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외경무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행위의 입안조사를 결정한다.

제12조 立案 조사의 결정은 외경무부가 공고한다. 공고에는 무역장벽조치 혹은 행위, 관련 조사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국가(지역) 명칭 등 내용을 기재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진술의견, 대중의 의견제출기한을 설명한다.

외경무부는 立案공고 발표 후 신청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 피조사국(지역)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立案공고 발표일을 立案일로 정한다.

제14조 외경무부는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立案인정을 내리지 않는다

- (1) 신청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 신청자료가 불충분하며 외경무부가 규정한 기한 내 관련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3)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행위가 본 규칙 제3조에서 언급한 무역장벽에 속하지 않는 경우
- (4) 외경무부가 立案 不可로 인정한 기타 상황

제15조 立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그 결정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제16조 외경무부가 立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경우 반드시 立案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인정

제17조 외경무부는 조사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행위가 본 규칙 제3조에서 말하는 무역장벽 구성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18조 조사과정 중 외경무부는 신청인과 기타 이해당사자가 주동적 혹은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자체 수집한 관련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조사수요에 따라 외경무부는 국무원 관계부서, 전문가, 학자로 구성된 전문 자문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조직은 조사관련 기술 및 법률적 문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제19조 외경무부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이해당사자의 현황을 파악, 조사할 수 있다.

외경무부는 필요 시 관계국가(지역)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사원을 해당 국가(지역)에 파견,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20조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정보의 누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외경무부에 해당자료의 비공개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외경무부가 비공개처리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공개처리를 하며 동시에 이해당사자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의 개요를 요구한다.

비공개로 처리한 자료는 자료 제공 이해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21조 외경무부는 조사과정 중 무역장벽조치 또는 조치의 해당국(지역)과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외경무부는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 (1) 해당국가(지역)가 합리적인 기한 내 그 조치를 취소 또는 조정을 승낙한 경우
- (2) 해당국가(지역)가 합리적인 기한 내 적당한 무역보상을 승낙한 경우
- (3) 해당국가(지역)가 무역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의 의무를 이행함을 승낙한 경우
- (4) 외경무부가 조사종료로 인정한 기타 상황

외경무부는 종료한 조사안건을 공고하며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 해당국가(지역)정부가 합리적인 기한 내 본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승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경무부는 조사를 개시하며 본 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해 조사 종료 결정을 내린 조사안건도 조사 개시한다.

제24조 조사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종료할 수 있으나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경무부는 그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며 공고를 발포한다.

- (1) 외국(지역)정부가 이미 무역장벽조치를 철회한 경우
- (2) 외국(지역)정부가 적당한 무역보상을 제공한 경우
- (3) 외국(지역)정부가 무역조약 혹은 무역협정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6조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경무부는 해당 조사를 종료하며 공고를 발포한다.

- (1) 신청인이 조사 과정 중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외경무부가 무역장벽조사종료로 인정한 기타 상황.

제27조 외경무부는 조사를 거쳐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혹은 행위가 본 규칙 제3조에 규정한 무역장벽 여부를 인정한다. 조사결과는 공고하며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8조 무역장벽조사는 立案결정 공고 날부터 6개월 내 종료하며 특수 상황일 경우 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 조치 혹은 실행방법이 본 규칙 제3조가 칭한 무역장벽으로 인정될 경우 외경무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한다.

- (1) 쌍방 협상 진행
- (2) 다자간 분쟁해결 시스템 가동
- (3) 적절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본 규칙에 따라 발표한 공고는 반드시 중요한 사실·이유·근거·결과와 결론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31조 외국(지역)정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투자장벽의 조사는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32조 본 규칙의 해석은 외경무부가 담당한다.

제33조 본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국적 고급인재 및 투자가의 입국 및 거류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

공안부, 외교부, 교육부, 과기부(科技部), 인사부, 노동보장부, 외경무부, 국무
원 화교판공실(外經貿部國務院僑辦), 국가외국전문가국(國家外國專家局)
(2002년 3월 26일)

외국국적 고급 인재 및 투자자에 대해 입국 및 거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중국 공안부, 외교부, 교육부, 과기부, 인사부, 노동보
장부, 국무원 화교판공실 및 국가외국전문가국이 공동으로 제정, 2002년 4
월 29일부로 국무원 판공청(國辦發[2002] 32호) 통지에 의해 실시됨

외국국적 고급인재 및 투자가의 중국내 서비스 제공 및 투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외국국적 고급인재 및 투자가에 대해 입국 및 거류편의를 제공하
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입국 및 거류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인사에 대하여 입국 및 거류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1) 省(部)級 국가기관이 초빙한 고급고문,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외
국과 서명한 국가급 및 省(部)급 과학기술협력사업, 중점 공정
협약, 인재교류항목을 집행하는 첨단기술, 고급관리인원
- (2) 국가 및 사회 등에 중대하거나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원 및 정
부간 무상원조협상을 집행하는 인원
- (3) 국가 및 省(部)級 과학연구기구, 중점 대학에서 초빙한 학술, 과
학연구 선두자 및 관련 단위에서 초빙한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

직명을 가지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는 학술, 과학연구 핵심인원

- (4) 기업, 사업단위 중 부총경리 이상 직무를 담당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는 고급 관리인원과 중요전문기술인원
- (5) 서부지구 또는 중부지구의 국가 빈민농가 부양개발사업 중점현에 100만불 이상 투자하거나, 기타 지구에 300만불 이상 투자한 인원 및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파견하여 중국에 온 관리인원 및 전문기술인원
- (6)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학상을 받은 외국국적 중국동포 및 기타 특출하고 중요한 외국국적 중국동포

위에 기술한 인원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자녀

2. 입국 및 거류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

- (1) 복수의 임시 입국이 필요한 외국국적 인원에 대하여 5년 복수 입국에 유효하고, 매번 거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F자(訪問類)비자(이하 장기복수 F字 비자라 함)를 처리할 수 있다.
- (2) 중국에서 근무하고 장기적 거류가 필요한 외국국적 인사에 대하여 5년이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및 상당하는 기한의 복수 출입하는 Z字(工作類) 비자를 처리할 수 있다.
- (3) L字(旅行類) 비자, F字 비자 및 X字(學習類)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인사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소유 비자를 Z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2~5년간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및 상당하는 기한의 복수 출입 Z字 비자를 처리할 수 있다. L, X字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는 소유 비자를 장기복수 F字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3. 입국 및 거류 편의사항 처리절차

- (1) 장기복수 F字 비자 처리에 부합되는 외국국적 인사는 駐外중국 대사(영사)관에서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입국후 중국공안 출입국관리부문에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내 관련단위는 외국국적 인사를 대신하여 처리 신청할 수도 있다.

각 駐外대사(영사)관은 외국국적 인사의 장기복수 F字 비자 신청을 접수한 후에 즉시 심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상황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부서(단위) 또는 省級 인민정부의 외사관리부문 등 1類 피수권단위(이하 1類 피수권단위라 함)에 보고하여 심사 기준을 받아야 한다. 1類 피수권단위는 심사허가에 대한 서한을 즉시 외교부에 통보하고 외교부는 駐外중국대사(영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 비준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駐外중국대사(영사)관은 즉시 신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중국 국내 단위가 외국국적 인사 대신 장기복수 F字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 국내단위에서 1類 피수권단위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는다. 1類 피수권단위는 즉시 심사 허가에 대한 의견서한을 외교부에 통보하고 외교부는 駐外중국대사(영사)관이 신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통지한다.

X字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가 장기복수 F字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중국의 관련단위가 1類 피수권단위에서 발급한 공문 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 증서,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공안출입국관리부문에 신청한다.

- (2) 5년이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및 상당하는 기한에 복수 출입하는 Z字 비자를 처리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국적 인사는 입국후에 본인 또는 중국의 관련단위가 중국공안출입국관리부문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Z자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는 본인 또는 중국 관련단위가 1類 피수권단위에서 발급한 공문 및 《외국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거주지 공안출입국관리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F, X字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는 본인 또는 중국의 관련 단위가 1類 피수권단위에서 발급한 공문 및 《외국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외국 투자가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공안출입국관리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 (1) 중요 우호 중국동포社團의 주요책임자 및 그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위에 기술한 규정에 의하여 입국, 거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駐外대사(영사)관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유형의 비자신청을 스스로 심사, 비준할 수 있다.
- (2) 장기복수 비자의 비용은 1년 복수 비자의 비용표준에 따라 수취하고, 급행료(加急費)를 받지 않는다.

<중국 주요 지역별 최저 임금표준>

구 분	시행일	최 저 임 금 표 준(위안/월)										
北京	'02.7.1	465(시간당 2.78)										
天津	'02.7.1	450	440									
河北	'02.3.1	350	300	250								
山西	'02.1.1	340	300	260	220							
吉林	'02.5.1	310	275	240								
上海	'02.7.1	535(시간당 4.0)										
江蘇	'02.7.1	460	370	320	260							
浙江	'01.4.1	440	410	380	340							
- 寧波	'01.4.1	440										
福建	'01.10.1	450	420	380	330	325	280	235				
- 廈門	'00.7.1	420	330									
山東	'02.10.1	410	380	340	310	290						
河南	'99.7.1	290	260	240	220	190						
湖北	'02.1.1	400	340	310	280	240						
湖南	'02.7.3	360	340	320	300	280						
廣東	'02.9.1	510	450	400	360	330	300	280				
- 深圳	'02.5.1	595(시간당 3.56위안)			460(시간당 2.75위안)							
海南	'02.7.1	450	350	300								
重慶	'02.5.1	320	300	280	260							
四川	'02.7.1	340	310	270	230							
貴州	'99.7.1	260	234	208	182							
云南	'02.7.1	360	310	270								
陝西	'01.10.1	320	295	270	245							
青海	'99.10.1	260	250	230	220							
寧夏	'01.12.7	350	320	290								
新疆	'99.10.1	390	340	300	280	270	260	250	230			
內蒙古	'99.7.1	273	247	221								
遼寧	'00.3.27	360	320	310	300	290	280	260	250	240	230	
- 沈陽	'00.11.6	380	320	250								
- 大連	'01.11.4	420	380	300								
黑龍江	'99.12	325	299	286	260	234	221					
安徽	'01.1.1	340	320	310	290	260	240					
江西	'00.3.1	250	230	210	190							
甘肅	'00.3.1	289	260	240								
廣西	'01.9.20	340	335	315	305							
西藏	최저임금표준 미 실시											

주 : 2002년 11월 말 현재 기준임

<2003년 중국의 법정 공휴일>

- 元旦 : 2003. 1. 1(수)

- 음력설(春節) : 2. 1(토)~2. 7(금)간 휴일 총 7일
 - 법정휴일 : 2. 1(토), 2. 2(일), 2. 3(월)
 - 공휴일인 2. 1(토)과 2. 2(일)이 법정휴일과 중복돼 이를 2. 4(화), 2. 5(수)에 사용
 - 공휴일인 2. 8(토), 2. 9(일)을 2. 6(목), 2. 7(금)로 앞당겨 사용하되 2. 8(토), 2. 9(일)은 정상출근

- 노동절 : 5. 1(목)~5. 7(수) 휴일 총 7일
 - 법정휴일 : 5. 1(목), 5. 2(금), 5. 3(토)
 - 공휴일인 5. 3(토)이 법정휴일과 중복되는 바, 이를 5. 5(월)에 사용
 - 5. 5(일) 정상적인 휴일
 - 공휴일인 4. 26(토), 4. 27(일)을 5. 6(화), 5. 7(수)로 돌려 사용하되, 4. 26(토), 4. 27(일)은 정상출근

- 국경절 : 10. 1(수)~10. 7(화) 휴일 총 7일
 - 법정휴일 : 10. 1(수), 10. 2(목), 10. 3(금)
 - 공휴일인 9. 27(토), 9. 28(일)을 10. 6(월), 10. 7(화)로 돌려 사용하되, 9. 27(토), 9. 28(일)은 정상출근
 - 10. 4(토), 10. 5(일) 정상적인 휴일 실시.<끝>